

조선후기 중인의 지방 파견제도와 그 실상^{*}

— 심약 · 왜학 · 한학 · 화원 · 사자관 · 검률의 통제영
파견에 관한 사례 연구

李勛相^{**}

I. 머리말	파행과 그 역사적 의미
II. 중인의 통제영 파견제도와 그 실상	V. 맺음말
III. 왜학의 근무지 이동과 처벌 그리고 한학의 역할	부록. 통제영 파견 審藥·譯學·畫師· 寫字官·檢律 등의 편람과 활동 사안
IV. 19세기 중엽 이후 심약 제도의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조선후기 중인들의 지방 파견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역할과 실상을 밝힌 것이다. 중인 중 상당수는 지방에 파견되어 근무했는데, 수도에 세거하는 이들을 지방에 파견하는 제도는 지방통치보다는 중앙집권체제의 유지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중인들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와 효과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 지방의 제일 큰 군사 기지인 통제영을 사례로 중인 파견제도와 그 실상을 밝혔다. 특히 왜학과 심약의 실상을 주목하여 중인 집단의 역할로 논의를 확장하였다. 그 결과 중인들은 잡과 취재라는 합리적 선발 제도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 S1A5A2A01023551).

** 동아대학교 사학과 특임교수

를 통하여 선임되었으나 업무 내용이나 규정은 상세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업무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부실한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특히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통제 범위에 벗어난 편법이 관행이 되었고, 이 같은 파행이 다른 군사 기지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파견지에서 이들의 역할은 士와 吏, 官과 吏, 儒와 吏로 대비되는 조선왕조 통치 체제의 합리성과 더불어 위험성도 동시에 생각하여야 함을 일깨워 준다고 보았다.

주제어 : 사자관, 심약, 왜학, 중인, 중인파견제도, 통제영, 한학, 화원, 군사 행정

I. 머리말

이 연구는 조선후기 통제영 경영과 관련하여 이곳에 파견된 중인을 대상으로 그 제도와 특성을 밝히고 이어 왜학과 한학 그리고 심약 등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상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차 집단이라 할 중인은 수도 한양에 세거하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 행정 분야에 종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이들 중인 계급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적지 않은 연구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축적되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중인이 지방에 파견되어 근무한 사실은 화원을 제외하면 잘 알려지지 않았다.¹⁾ 중인을 지방에 파견하는 제도는 조선왕조의 통치 체제에서 중인의 역할과 위상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서인 만큼 이 제도와 이들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늦었지만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중인은 감영과 같은 상급 행정 기구나 통제영이나 병영, 수영 등과 같은 상급 군사 기지에 주로 파견되므로, 이 제도의 운용에서 상급 군영의 비중은 컸다. 따라서 중인들의 지방 파견제도는 조선왕조의 통치 체제와 軍事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관관계를 논의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인의 업무는 파견지의 향리나 이들로부터 선임하는 營吏들의 업무와 중복되어 營吏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앙에서 중인을 직접 양성하여 파견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조선왕조는 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파견하는 중인은 시대가 내려올수록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중인을 지방에 파견하면서 근무하는 것이 경제적 기대 이익을 상쇄할 만큼 행정적으로 중요했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을까? 이 같은 일련의 물음은 조선왕조의 행정 체제 및 관료제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서 중인 역시 吏胥와 마찬가지로 행정 실무를 담당한 점에서 官과 吏, 士와 吏, 儒와 吏로서 대비되는 동아시아의 전형적인 이원적 통치 체제와 그 합리성에 새로운 물음을 제기하는 셈이다. 중인 및 잡과 체제의 연구를 개척한

1) 화원의 사례는 다음이 참조된다. 이훈상, 「조선후기 지방 파견 화원들과 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지방 형상화」, 『동방학지』 144, 2008. 감영이나 군영 외에 왜관 경영과 관련하여 동래에 파견된 왜학과 이들의 활동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나왔다. 다만 이들이 요지와 직접 연관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시한다.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는 19세기 말 조선왕조가 겪은 비운과 관련하여 유사한 물음을 제기한 바 있다.²⁾ 그렇지만 논의를 더 진전하지는 않았는데, 이 연구는 이 같은 논제를 문제의식의 중심에 놓고 있다.

이 같은 구도 위에서 이 연구는 통제영을 사례로 중인을 파견하는 제도가 언제 도입되었고 어떠한 직책들을 어떠한 의도 아래 파견하였으며 파견한 중인은 얼마만큼 되었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물음으로부터 논의를 출발한다. 각 직책은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파견하며 파견 목적도 차이가 있으므로 중인 파견제도의 복잡한 층위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이어 왜학 및 심약을 중심으로 제도 운영의 실상을 밝히려 한다. 이것은 각기 조선후기 대외 관계 및 사회 집단에 기초한 제도 운영의 역사적 현실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제영은 지방에서 가장 큰 군사기지로서 다른 군영이나 감영과 비교하면 가장 많은 중인이 파견되었다. 그렇지만 관련 기록물은 찾기 어려우며 특히 직책과 역할에 따른 편차도 매우 커서 전체 파견 중인과 그 특성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다행히 장기간에 걸쳐 통영 지역에 대한 다양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다양한 통제영 기록물들을 찾아내어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기초 작업을 수행한 덕분에 중인과 관련된 작업에 나설 수 있었다.³⁾ 거의 3백 년에 걸쳐 통제영에 파견된 중인들에 대한 총람을 작성-수록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성과의 하나일 것이다.

이와 함께 중인의 지방 파견제도와 그 실상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통제영을 이끌어 간 다양한 부류들에 관하여도 선행 연구를 수행하였다. 통제영은 통제사와 그의 참모라 할 군관 집단, 그리고 영읍에 세거하면서 상급 무임을 독점-세습하는 집단이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중인 및 외읍의 향리 가문에서 차정한 영리 등의 행정적 보좌 아래 계급상으로 하위에 있는 영읍 출신의 병교나 진리들을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외읍 향리 출신의 영리 그리고 통제영 영읍에 세거하는 진리 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제 중앙에서 파견한 중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통제영의 군사 행정을 뒷받침한 세 이차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삼부작 연구는

2) 에드워드 와그너, 「조선왕조의 중인제도에 대한 연구」, 이훈상 외 역, 『조선왕조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 266~267면.

3) 이훈상, 『조선후기 통제영의 사례책들과 세병관의 기문들』,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4 및 『조선후기 이후 근현대기 통영 충렬사의 尋院, 이순신장군 祭禮, 그리고 그 기록물 尋院錄 I』, 석당학술원, 2019.

일단 마무리한 셈이다.⁴⁾

통제영은 수도에서 먼 변방에 위치하므로 수도 한양에 세거하는 중인에게 근무 환경은 매우 낯설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에 가깝다. 통제사를 무반 별렬 출신들이 독점-안배하는 추세 속에서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거나 통제사가 자책하는 20인에서 30인 사이의 군관 집단은 시대가 내려올수록 대부분이 한양 출신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⁵⁾ 그러므로 통제영의 지휘부는 한양 중심의 사회 구조와 연망을 거의 그대로 옮겨 왔다고 보아도 좋다. 요컨대 통제영 영읍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도 한양 출신을 비롯하여 외읍에서 차정한 영리 등 외지인과 통제영 영읍 출신으로 구성되는 이원 체제는 통제영의 현저한 특징이며 이것은 통제영 중인의 위상을 논의하는 큰 전경이 된다.

II. 중인의 통제영 파견제도와 그 실상

조선후기 상급 군영이나 감영의 각별한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의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심약, 역관, 검률, 화원, 사자완 등 중인을 파견한 사실이다. 특히 시대가 내려올수록 파견 직책이 늘어나는데 이들의 파견 목적이나 자격에는 편차가 있었다. 이제

4) 이훈상, 「조선후기 통제영의 영방과 영리 그리고 이들의 출자」, 『진단학보』 135, 2020 및 「통제영 영읍의 발전과 진리 집단의 형성」, 『역사학보』 249, 2021.

5) 통제영에는 통제사의 이임과 더불어 통제사와 함께 근무한 군관들과 중인 그리고 영읍 출신의 장관들의 성명과 거주지를 수록한 현판을 만들어 세병관의 처마에 거는 기념비적인 전통이 만들어졌다. 덕분에 외지 출신 군관들의 거주지를 알 수 있는데, 시대가 내려올수록 이들의 거주지는 압도적으로 한양이다. 제한된 지면으로 여기에 상세한 분석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별렬사회로의 변화와 연동된 것임은 분명하다. 세병관의 현판은 1602년부터 1874년 사이의 것 43개가 남아 있는데, 필자는 최근 문집에서 기문 하나를 새로 찾았다. 金基洛 編, 『嘉齊事實錄』, 1865,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57-가61. 한편 통영 충렬사에도 심원한 이들의 명부인 『심원록』에서도 중인들을 추가로 찾아냈다. 이들 기록물은 성명 외에 본관과 거주지를 기재하고 있어 심원한 중인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들 두 기록물은 조사 연구를 거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덕분에 통제영의 군사 행정을 담당한 세 집단에 관한 연구가 가능했다. 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훈상, 『조선후기 통제영의 사례책들과 세병관의 기문들』 및 『조선후기 이후 근현대기 통영 충렬사의 尋院, 이순신장군 祭禮, 그리고 그 기록물 尋院錄 I』.

통제영을 사례로 지방 파견 중인 직책의 설치 시기와 존속 기간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표 1〉 통제영 중인 직책의 설치 시기와 존속 기간(연대 앞의 문자 *는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의미)

	1600~1647	1648~1700	1701~1750	1751~1800	1800~1850	1851~1895
심약	1609*				1820*	
한학		1648				
왜학	1631*	1648	1706*			
[소통사]			1717*			
화사군관			1703*			
사자관				1772		
검률						

이 일람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통제영에는 모두 여섯 직책이 파견되었다. 관상감이 나 검루서, 통례원, 산학 등에 배속된 중인 직책은 파견되지 않았다. 소통사는 왜학을 보좌하면서 함께 근무한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일람표에 넣었으나 동래 출신인 소통사는 중인이 아니며 중앙정부에서 파견하는 왜학 보다 사회 지위가 낮다.⁶⁾

중인 직책 중 제일 먼저 파견된 것은 심약인데, 1609년에 통제영을 현재 장소로 이설한 6대 통제사 이경준 때부터 파견 기록이 나온다. 다만 군부대의 특성상 통제영을 처음 설치한 임진왜란 때부터 파견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심약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목할 사안은 대략 1820년(또는 1830년) 무렵부터 강원도 원주 감영의 심약이 겸차한 것인데,⁷⁾ 법전 규정과 어긋나는 이 같은 파행은 통제영이 폐지될 때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왜학 및 한학을 통제영에 파견하는 제도는 1648년에 체계를 갖추었다. 그 전부터 통제사가 군관 자격으로 왜학을 대동하였으나, 이때 인조의 결정 아래 파견제도를 재정비하고 한학도 추가한 것이다.⁸⁾ 그 후 58년이 지난 1706년에는 근무지를

6) 소통사의 사회 지위와 위상에 관해서는 다음이 도움이 된다. 김동철, 「17~19세기 동래부 소통사의 편제와 대일활동」, 『지역과 역사』 17, 2005 및 「동래부 小通事 金采吉 관련 준호구와 그의 개항 전후 활동」, 『한국민족문화』 69, 2018.

7) 심약의 겸차에 관해서는 IV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거제로 옮겼다. 이때 옮긴 장소가 옥포진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1716년 이후에는 옥포진으로 굳어졌다. 왜학당도 아마도 이 무렵에 건립되었을 것이다. 더불어 같은 해에 소통사를 동래부에서 옥포진으로 파견하여 왜학을 보좌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화원의 경우 통제영에 파견하기로 한 것은 1703년(또는 1704년) 무렵인데, 의도적 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 직후 공교롭게 왜학은 거제로 근무지를 옮겼다. 이때 통제영을 포함한 14개 군영에, 이어 1740년에는 경기도를 제외한 7도 감영에 파견하였다. 상급 군사기지와 상급 행정 기구에 2대 1의 비율로 파견된 셈이다.⁹⁾ 이 같은 조치에 대하여 처음에는 여러 곳에서 반발하였는데 이것은 군사기지나 행정 기구에서 이들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화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반발을 고려하였는지 감영에는 거의 36년(내지 37년)이 지난 후 파견하였다.

이 제도를 통하여 파견된 화원은 도화서 화원 전체의 거의 반에 이르므로 화원들의 측면에서 볼 때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18세기 이후 많은 작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큰 분기점이 된 것도 분명하다. 그 후 1772년에는 사자관들이 화원들을 선례로 자신들에게도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청원하여 화원이 파견된 21곳에 일률적으로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조치에 힘입어 역관들도 화원이나 사자관과 마찬가지로 감영과 군영에 군관 자리를 마련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데¹⁰⁾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같다.

화원이 지도 제작의 중심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것 외에 파견지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고 이들의 전문성이 파견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지 못한다. 사자관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지방 파견제도가 많은 화원과 사자관의 생계 보장에 이바지하여 18세기 이후 통치와 문화 예술의 발전에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 미술사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방 파견제도에 필적할 중요한 문화 예술 정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더라도 이 정책은 재정의 어려움을 겪던 지역사회로서는 새로운 부담을 가중

8) 『승정원일기』 1648년 10월 13일.

9) 이훈상, 「조선 후기 지방 파견 화원들과 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지방 형상화」, 308~313면.

10) 『승정원일기』 1797년 3월 17일.

했다고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같은 파견제도가 중앙의 문화 예술의 확산과 지역의 대응이라는 선순환구조를 끌어냈다고보다는 오히려 중앙의 화원이나 사자관에 대한 자원 편중과 재생산 구조의 고착화로 인하여 지방의 문화 예술의 잠재성을 위축시켰을 가능성일 것이다. 동래 등에서는 매우 드물지만, 역관 중 근무를 마친 후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근에 정착한 사례가 찾아진다.¹¹⁾ 그렇지만 통제영의 경우 그 같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주에 따른 새로운 변화는 기대할 수 없었다.

검물은 통제영의 경우 중인 직책 중 가장 늦은 1870년 말에 신설된 후 불과 3년만인 1874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파견 검물은 3명에 그쳤다.¹²⁾ 당시 검물의 신설은 통제영의 승격에 따른 것인데, 이것은 호적 문제로 봉기가 일어나면서 고성을 통제사에게 배속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행정 기구의 확대와 고성 관아의 이건 등 새로운 부담에 직면했다. 요컨대 검물 파견은 통제사의 승격에 상응하는 제도 확충일 뿐 군사기지 본연의 역할인 군비와는 사실상 무관한 것이었다.

통제영의 중인 파견제도의 중요 특징은 다수의 중인 직책자가 파견되어 함께 근무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함께 근무한 기간은 얼마나 되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중인 직책들의 파견 시기가 각기 다른 만큼 4인이 함께 근무한 기간은 1772년에서 1820년(또는 1830년)까지 약 48년(또는 58년)이 된다. 3인이 함께 근무한 기간은 1772년 이전 약 125년, 1820년(또는 1830년) 이후 75년 또는 65년으로 모두를 합산하면 약 190년(또는 200년)이다. 따라서 3인 이상의 중인 출신 직책자가 통제영에서 함께 근무한 기간은 최소 238년에서 최대 258년이 되는 셈이다. 통제영 외에도 각지에 파견된 중인은 2인 또는 3인이 함께 근무하고 생활하였다. 외지 파견을 통하여 공유한 경험과 유대는 이 집단의 세습과 연동되어 중인의 계급적 정체성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한편 화원이나 사자관 등은 통제사의 군관 자격으로 파견되어 그 위상이 대술군관

11) 잘 알려진 역관 현덕윤의 후손이 그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손숙경, 『천주교 수용자 중인 김범우의 밀양 유배와 역관 현덕윤 가계의 밀양 이주 그리고 관련 문서』, 석당학술원, 2017.

12) 『심원록』에는 검물 趙得淵이 1783년에, 劉國亮이 1802년에 각기 통제영을 방문한 사실이 나온다. 그 외에 관련 기록이 없으므로 공무로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과 거의 대등한 것도 주목할 사안이다. 통제사의 참모라 할 군관은 통제사 개인이 선임하는 계청군관과 국가가 차정하는 대솔군관으로 나누어진다. 대솔군관은 병조에서 직접 임명하며 통제사의 교체와는 관계없이 임기가 정해져 있다. 변방에서 통제사가 독자적인 군사 세력을 갖지 못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라고 보아도 좋다. 한편 지방에 파견하는 중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법전에 규정하고 있고 대우 등은 통제영의 사례에 올라있다.¹³⁾

〈표 2〉 통제영에 파견하는 중인의 자격과 대우

	군관 12	심약 1	한학 1	왜학 1	畫師 1	사자관 1
자격		전의감 해민서 의생	사역원 생도	사역원 생도	도화서 생도	사자청 생도
선발 방식	병조	예조 試材	예조 試材	예조 試材	久勤	久勤
근무 기간		1년	2년	2년	2년	2년
	4량	4량	4량		4량	4량
	4石14斗4刀	3石1斗8刀	3石1斗8刀		4石14斗4刀	4石14斗4刀
4節衣資米	5석	5석	5석		5석	5석
紙筆墨					3石9斗6刀	3石9斗6刀

이들의 선발 자격이나 과정이 법전 규정 그대로 시행되었는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심약의 경우 읍지에는 생도를 파견하는 것으로 나오는 데 『해국지』 등은 자격과 관련하여 취재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수록하였다.¹⁴⁾ 그렇지만 실제 파견된 심약은 부록의 일람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연료이나 경력에 있는 인물이 적지 않으므로 규정과 현실 사이의 관계는 추후 더 논의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그 자격이 어떻든 중인에 대한 우대 규정은 모두에게 고르게 적용된 것으로 믿어진다.

13)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의정부 편, 『統營誌』, 1895년, 奎12186 및 이훈상, 『조선후기 통제영의 사례책들과 세병관의 기문들』.

14) 심약의 취재와 자격은 『惠局志』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姜渭聘, 박훈평 역, 『譯注 惠局志』, 퍼플, 2015, 46~47, 51~52면. 1823년의 읍지 등은 매우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다. 統制營 編, 『統營誌』 1823년, 奎10876. 규정 자체에 대한 해석도 많이 필요하지만 부록에 수록한 심약의 경력과 연료로 미루어 규정과 현실 사이에 적지 않은 거리가 느껴지는 만큼 제도와 실제 사이의 관계도 더 관심을 갖고 밝혀져야 한다고 믿는다.

현재 전승되는 통제영 사례책 중 중인의 料米 등 대우에 대한 기록은 다른 군영이나 감영 또는 소속 부서에서 편찬한 사례책과 비교하면 매우 소략하다.¹⁵⁾ 거의 모든 파견지의 중인에 대한 공식적인 대우는 기본적으로 거의 표준화되어 있다. 통제영 역시 마찬가지다. 한편 왜학은 대우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은데 이것은 옥포진이 근무지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곳에서 料米 등을 처리한 것으로 생각되는 데, 다른 중인과 대우가 같았을 것이다. 한편 심약은 다른 직책에 비하여 대우가 조금 떨어지지만, 이것은 심약이 약재 매매나 의료 등을 통하여 다른 직책보다 오히려 경제적 기회가 더 있으므로 이렇게 책정했을 것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강원 감영의 심약이 통제영의 심약도 겸차하는 데 그 요인과 관련하여 매매 규모가 적은 것을 거론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무과 급제자인 대솔군관은 대부분이 양반 출신으로서 중인과 출신 계급에 차이가 있다. 그렇더라도 대솔군관과 중인은 거의 대부분이 한성 출신이며 모두 중앙 정부에서 차정하며 임기제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나아가 위의 일람표에서 볼 수 있듯이 양 집단의 대우도 거의 비슷하며, 군관청을 공동 집무 공간으로 함께 사용하는 등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통제영에 파견되어 근무한 중인은 얼마나 될까? 제도의 존속 기간과 실제 파견 기간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데 이것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통제영의 중인 직책자의 파견 기간과 파견 추정 인원

기간 및 인원	심약 1	왜학 1	한학 1	畫師 1	사자관 1	검물 1
제도 존속 기간	287년 이상	248년 이상	248년	193년 전후	124년	3년
실제 파견 기간	212년(또는 222년)	265년 이상	248년	193년 전후	124년	3년
임기	1년	2년	2년	2년	2년	1년
실제 파견 인원	212인(또는 222인)	133인 이상	124인	97인	62인	3인
성명을 찾은 인원	77인	130인	58인	31인	7인	3인

15) 전의감에서 편찬한 『審藥事例』에는 파견지에서의 심약에 대한 대우 내용과 수준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의감 편, 박훈평 역주, 『譯註 審藥事例』 상·하, 퍼플, 2015년. 이 중 통제영은 81~85면을 참조할 것. 이것은 심약 외에 나머지 중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되지만 그 분량이 적지 않으므로 필자는 통제영의 각종 사례책에 간략하게 적출되어 있는 것을 일람표로 정리하였다.

일람표 중 심약은 임기가 1년인데 1820년(또는 1830년) 이후 63년(또는 73년) 이상을 다른 곳의 심약이 겸차했다는 기록을 토대로 이 기간은 빼고 추정하면 212인(또는 222인)이 된다. 심약 다음으로 많은 2년 임기의 왜학의 경우 중간에 옥포진으로 근무지를 옮겼으나 실제로는 통제영에 배속되어 있었으므로 이들도 합산하면 133인 이상에 이른다. 한학은 왜학과 거의 비슷한 124인이며, 화원은 97인, 사자관은 62인, 검률은 3인이다. 이들 모두를 합산한 대략 631인(또는 641인)의 중인이 17세기 이후 통제영에 파견된 셈이다.

통제영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 파견된 중인 직책자는 규정대로라면 최대 95인으로 추산된다.¹⁶⁾ 그렇다면 지방에 파견된 중인은 입번하여 근무하고 있는 전체 중인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일까? 필자는 1851년 당시 중인 통청 운동에 참여한 인원을 계상하면서 이들이 셋으로 나누어 입번한다고 가정하여 일시에 근무하는 중인을 대략 560인 정도라고 추정한 바 있다.¹⁷⁾ 따라서 지방 파견 중인은 전체 중인의 17% 정도로 추정되어, 지방과 중앙정부에서 각기 근무하는 중인은 1대 5 정도로 환산할 수 있다.¹⁸⁾

향리들의 경우 감영이나 병영, 수영의 영리로서 입번 경험을 가진 이들은 戶長이나 吏房 등 요임을 독점-안배하면서 읍권을 주도한 이족 내 주도 가계 구성원의 대략 3분의 1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¹⁹⁾ 그리고 이 같은 상급 군사 또는 행정 기구에서의 경험이 근대 이후 출신 외읍의 규모나 거리 등 지정학적 위상과는 관계없이 거의 모든 외읍의 주도 가계 출신이 현저한 사회 진출을 하는 배경의 하나였을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중인은 어떨까? 중인의 추계는 쉽지 않은데 이것은 파견 관련 기록물을 찾기 어려운 데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인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방목이나 족보를 비롯하여 소속 기관의

16) 한성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 파견된 중인을 『六典條例』 등을 토대로 정리하면 역학 21인(한학 10인, 청학 3인, 몽학 1인, 왜학 7인), 심약 18인, 화원 21인, 사자관 21인, 검률 14인, 管餉算士 1인 등 96인이 된다. 아마도 실제 운영에서는 법전 규정보다는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17) 이훈상, 「1851년의 중인 통청 운동과 화원들의 항방」, 『역사학보』 238, 2018년 6월, 241면.

18) 중인들이 배속된 10개 관청 중 관상감이나 통례원, 검루청등 3개 부서는 지방 파견제도가 아예 없었으며 산학청의 경우 한자리에 불과하다. 이들 네 부서의 중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 중인 376인이 된다. 이 중 산학을 제외한 94인이 각지에 파견되어 근무하므로 근무하는 현임 중인 376명의 25% 정도가 된다. 지방 파견 인원이 많은 부서의 중인 중 4분의 1 정도가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19) 이훈상, 「조선후기 통제영의 영방과 영리 그리고 이들의 출자」, 119~120면.

각종 회의록이나 先生案 등이 속속 발굴되어 활용되었지만, 이들 기록물에는 지방 파견과 관련된 사안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²⁰⁾

다만 왜학의 경우 경상우도의 일본 배의 표류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가 전승되고 있어 이들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²¹⁾ 반면 같은 역관인 한학의 경우 그 실상을 전혀 알 수 없다. 화사군관이나 사자관도 관찬 기록에서 파견 실태나 업무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이들이 생산했을 시각 문화 관련 기록물도 지도를 제외하면 찾기 어렵다. 결국 631인(또는 641인) 정도로 추정되는 통제영 중인들의 실상은 단편적인 기록들을 조합하여 재현할 수밖에 없다.

중인 계급에서 지방 파견제도가 갖는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왜 관련 기록을 찾기 어려운지는 또 다른 중요한 물음이라 생각된다. 중인 관련 기록을 담은 통제영의 기록 문화 전통이 소중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통제영 세병관의 현판이 그러한데, 이 현판은 통제사와 군관 등이 함께 근무한 것을 기념하여 성명과 거주지 등을 새긴 것인데, 통제사의 이임에 맞추어 제작한 후 세병관의 천장과 기둥 등에 달았다.²²⁾ 따라서 시간이 내려올수록 세병관의 내부는 통제영을 거쳐 간 통제사와 군관 그리고 중인을 기념하는 현판으로 채워져 통제사의 권위를 드러내는 장엄한 미장센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기념비적인 기록물에 중인만을 따로 모아 다른 집단과의 경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도 흥미롭다. 반면 통제영 영읍 출신의 진리나 병교 그리고 영리 등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특히 각 읍의 중요 향리 가문 출신인 통제영 영리가 현판에 빠진 것은 향리와 중인과의 위계 관계를 성문화하지 않으면서도 규정하는 사회 문화적 메타포로 보아도 좋다.

중인의 사회 문화적 위상을 드러내는 또 다른 중요 기록물은 통영 충렬사의 尋院人 명부인 심원록이다. 이것은 각지에서 충렬사를 찾아와 심원한 이들이 자신의 직책과 성명 그리고 거주지 등을 수록한 것인데, 통제사 등 충렬사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제사를 집전한 부류들도 그 역할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심원인이나 제사를 집전한

20) 심약의 경우 사례책이 전승되어 이것을 참조하였다. 전의감 편, 박훈평 역주, 『譯註 審藥事例』. 반면 다른 직책자들의 경우 소속 부서의 사례책을 찾을 수 없다.

21)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부록의 일러두기에 제시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외교류의 문서를 집성한 사례를 따르면 통제영 파견 왜학의 중요 업무는 『同文彙考』 중 '倭情'으로 일본과 표류 일인에 대한 수시 보고에 국한되는 셈이다.

22) 이훈상, 『조선후기 통제영의 사례책들과 세병관의 기문들』 참조.

이들 대부분은 사족이지만, 중인도 심원록에 심원 사실을 밝혔다.²³⁾ 반면 영리는 빠져 있어 심원록에 성명을 올릴 수 있는지의 여부가 통제영에서 사회적 경계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지표임을 알려준다. 다만 제사를 집전하는 데에는 중인은 하나같이 배제되어 있어 제례와 같은 문화적 행위 등이 통제영 제 집단들 사이의 사회적 구별짓기 등을 만들고 가고 있음을 알려준다.²⁴⁾

세병관이나 총렬사등에서 창출된 조선후기 통제영의 기록 문화 전통과 의례는 중인의 위상에 대한 거시적 조망을 제공한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통제영에서 중인들이 실제로 겪은 상황이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실상에 생생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일찍부터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되고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간주한 직책인 왜학과 심약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Ⅲ. 왜학의 근무지 이동과 처벌 그리고 한학의 역할

1648년에 중앙정부는 통제영에 왜학과 한학을 보내기로 결정했다.²⁵⁾ 논의 중 그 전에는 왜어나 漢語에 익숙한 이들을 諸營과 諸鎭에 군관으로 차임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 1648년에 왜학과 한학을 함께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전에 통제사가 왜학을 겸대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겸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실제로 이보다 18년 앞선 1630년 전후에 통제영에서 근무한 왜학 3인이 찾아진다.²⁶⁾ 요컨대 1648년의 차송 결정은 그동안 자의적이었던 왜학의 차송을 임기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제도로써 정착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1706년에 근무지를 거제로 바꾸고,²⁷⁾ 이어 1709년에는 경상도 우도에 일본

23) 부록 일람표 중 일러두기 참조.

24) 이진욱, 「한말 식민지기 통영 총렬사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새로운 추모의례 조직」, 『사회와 역사』 121, 2019; 손숙경·박지현·허모영, 『조선후기 이후 근현대기 통영 총렬사와 이순신장군 제례 祭禮, 그리고 전승 기록물 I』, 석당학술원, 2019 참조.

25) 『승정원일기』 1648년 10월 13일.

26) 세병관의 기문에 나오는 3인은 모두 한양에 거주하며 이 중 1인은 역학 급제자이며 또 다른 1인은 잘 알려진 역학 가문인 천령 현씨 출신이다. 1630년이라는 이른 시기에도 이미 조선후기 전형적인 역관 가문 출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셈이다.

인이 표착하면 동래부에서 부산의 별차를 보내어 거제의 왜학과 함께 문정하도록 한 종전의 관행을 혁파하고 경상도 우도의 문정은 거제의 왜학이 전담하도록 하였다.²⁸⁾ 1716년 이후에는 옥포진을 왜학의 근거지로 확정하는 데,²⁹⁾ 이와 함께 소통사도 파견하여 왜학과 함께 근무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왜학의 전진 배치와 근무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셈인데, 이 같은 조치는 적절했다. 왜선의 표류는 옥포진 부근에서 계속 일어났고 왜학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옥포진에 왜학을 배치한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경남 연안의 신속한 출동 및 보고 체제를 갖추는 데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대신 왜학의 부담은 크게 늘었다. 일단 통제영에 온 심약이나 한학 등 같은 한양의 중인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무엇보다 책임이 가중되었다. 동래부에서 파견한 별차와 함께 처리할 때는 별차의 역할이 컸으나,³⁰⁾ 이제는 경상우도의 문정 업무를 책임지게 된 것이다.³¹⁾ 동래부에서 소통사를 파견하여 보좌했지만,³²⁾ 양자는 지방과 중앙이라는 출신지만이 아니라 출신 계급에도 큰 차이가 있었고,³³⁾ 이에 따라 문제가 생기면 왜학만 처벌받았다.

소통사의 성명은 1717년 이후 처음으로 기록에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이 해부터 왜학의 근무지가 옥포진으로 확정되었다.³⁴⁾ 이와 관련하여 1703년에 이르러 그 전에 16명인 동래부의 소통사를 35명으로 대폭 증액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덕분에 1716년에 왜학을 옥포진에 이치하면서³⁵⁾ 소통사를 옥포진에 파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년 주기의 왜학과는 달리 소통사는 3개월 단위로 교대하였다.³⁶⁾ 왜학은 통제사가 관할하였으나,³⁷⁾ 소통사는 동래부에서 계속 급료를 지급하는 등

27) 『統營誌』, 「官職」, 1823년경, 奎10876.

28) 『典客司別膽錄』, 1709년 8월 10일.

29) 『統營啓錄』 1, 「統營啓錄便攷」, 1716년 10월, 東京, 東洋文庫 VII-2-243.

30) 『典客司別膽錄』, 1709년. 이 해에 옥포에 파견된 왜학은 金時璞으로 나온다. 『別差倭膽錄』 1709년 12월 29일.

31) 『增正交隣志』 2.

32) 『邊例集要』 下 「譯官」 '己丑'.

33) 김동철, 앞의 글 참조.

34) 옥포 소통사에 대한 첫 기록은 『漂人領來膽錄』 중 1717년 8월 28일자 기사이다.

35) 『統營啓錄』 1, 「啓膽年條」, 1716년 10월.

36) '玉浦通事一名, 三朔交遞, 立番玉浦時, 本府給草料, 或周年交遞,' 『增正交隣志』 3 「率屬」.

동래부사의 통제 아래 있었다.³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찍부터 역관과 현지 출신의 소통사가 함께 근무하는 동래나 의주의 경우 소통사를 양성하는 체제를 갖추었다.³⁹⁾ 반면 옥포진에는 소통사 양성 체제는 없었으므로 표류민이 가장 많이 나온 지역에 일본어를 구사하는 지역민이 나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외국어 정책은 조선후기 엄격한 해금 정책에 지역사회에 관철되는 또 다른 중요 축인 동시에 주변부 지역사회가 낯선 새로운 세계와 주도적으로 만나거나 관심갖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든 셈이다.

옥포는 일본 선박이 가장 많이 표류하여 기착한 곳인 만큼,⁴⁰⁾ 표류 관련 기록도 충실하다. 왜학이 거제로 근무지를 바꾼 1706년부터 왜학의 성명이 가장 늦게 확인되는 1886년까지 181년 동안 각종 기록에서 찾은 왜학은 약 96인이다. 이 중 관련 기록이 공백인 기간에 대체로 10인 이내의 왜학이 파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1706년부터 1886년 사이에 옥포진에 파견된 왜학은 약 112인 이상일 것이다. 따라서 파견한 전체 왜학 중 약 91.1%를 찾은 셈이다. 이 수치는 다른 파견 직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며 동래 외에 다른 지역들의 파견 중인들과 비교하더라도 그렇다. 이것은 변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민감한 관심을 반영하며, 나아가 왜학의 처벌 빈도가 유독 높은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일단 처벌 관련 사안을 일람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왜학의 처벌과 빈도

장소	통제영			의금부	총계
유형	勘罪 拿問 查問 從重勘律 重勘 懲礪 懲治 責治 治罪 治罪懲後	決棍 拿棍	罷黜	압송 후 장형 및 유배	
건수	17	12	6	14(4건은 감형)	49인/112인
비율 I	34.7%	24.5%	12.2%	28.6(8.2)%	100%
비율 II	15.2%	19.7%	5.4%	12.5(3.6)%	43.8%

37) 위의 글.

38) 의정부편, 『統制營啓錄』, 1873년 9월 25일, 奎15101.

39) 김동철, 앞의 글; 신세완, 「18~19세기 의주부 소통사의 존재양상과 활동」, 『지역과 역사』 41, 2017.

40) 이것은 통제영의 계문 중 “玉浦則 邊情頻數 倭學 不可一時曠任”이라고 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統制營啓錄』 1873년 9월 25일.

이 일람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112인 중 43.8%에 해당하는 49인이 처벌받았다. 5인 중 2인 이상이다. 조사와 처벌은 통제영과 의금부에서 집행하는데, 이 중 의금부는 중형을 담당했다. 중형 대상이라고 판단된 이들은 파출된 후 한성으로 압송되어 조사받은 후 장형을 받고 유배를 갔는데 이 중 4인은 형량이 줄거나 면제받았다. 중형을 받은 인원은 14인으로 전체 처벌 인원의 28.6%에 이른다. 특히 14건 중 57.1%에 해당하는 8건이 1813년부터 1866년까지 53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은 주목된다. 이것은 19세기 이후 국제관계의 변동에 따른 변방의 고조된 긴장과 함께 중앙정부의 민감한 태도를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통제영에서 직접 처벌한 왜학은 모두 35명으로 71.4%인데, 결국이나 파출 등은 중앙정부의 재가를 받아야 했다. 결국의 경우 대부분이 다시 옥포진으로 돌아와서 근무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은 파출인데, 일람표에 제시한 파출 6건 외에 의금부로 압송한 중형 사안도 파출부터 시킴으로 실제 파출 사례는 20건에 이른다. 이것은 전체 처벌 사안 중 40.8%에 해당한다. 옥포진에 파견된 왜학의 수가 유독 많은 것은 파출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한 탓이다. 내용은 분명하지 않으나 통제영에서 조사를 받고 처벌 수위를 결정했을 사안도 17건에 이른다. ‘勘罪, 拿問, 査問, 從重勘律, 重勘, 懲礪, 懲治, 責治, 治罪, 治罪, 懲後,’로 나오는 사안이 이것인데 그 후 계속 옥포진에서 근무한 것으로 미루어 파출되거나 의금부로 압송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처벌 사유는 표류한 배와 왜인 등을 조사하고 심문하는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것이 대부분이다.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것은 엄격하게 다루어졌으며 특히 잠매는 일종의 본보기로서 엄벌 대상이었다. 다만 옥포진의 지정학적 위상으로 인하여 잠매는 한 차례에 불과했다. 왜학 파견과 그 후의 승진 기준이 어떤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옥포를 거친 왜학 중 고위직에 오르거나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준 인물이 5인 남짓한 것은 처벌받은 왜학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지 모른다.

옥포진의 왜학에게는 동래부의 역관이 왜관의 일본인을 상대로 공작미 등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교섭 업무는 사실상 없었다. 따라서 업무는 복잡하다고 할 수 없지만 옥포진의 왜학은 전국 각지에 파견된 역학, 나아가 중인 전체를 통틀어 비교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처벌 빈도가 높다. 그렇다고 이것을 상쇄할 기회나 대가도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왜학의 입장에서는 옥포진이 가장 기피하는 근무지였을 것이다.

이 같은 처벌 빈도와는 별개로 이미 17세기에 군영의 근무 환경은 좋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80년에 각 군영에서 대우가 너무도 형편없어 모두가 厭避하며 이곳에 차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마치 사지에 가는 것 같이 생각한다는 지적이,⁴¹⁾ 이것을 잘 보여준다. 이를 계기로 軫恤하는 조치가 따랐으나 통제영의 경우 그 후 처벌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돌아볼 때 사지라는 표현은 오히려 그 후 더 많이 사용했을 것 같다.

이 일련의 상황은 왜학에 대한 중인의 선호도를 낮추는 중요 요인이었을 것이다. 1876년에 이르러 일본어 통역자도 적고 통역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우려하면서, 그 요인과 관련하여 중인의 독점도 심각하게 거론한 것은 각별히 주목된다.⁴²⁾ 개항 직전의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과 긴장을 반영하는 데 여기에서 거론된 문제들은 1748년에 왜학 응시자가 매우 적다는 지적 이후 계속해서 논의된 것이었다.⁴³⁾ 한 마디로 117년이 지나도록 문제를 진단하여 근본부터 해결하려는 개혁 시도는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옥포 왜학의 처벌 사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여주는 셈이다.

왜학을 포함한 역학은 대외 교섭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이것을 주도로 끌고 나가거나 결정할 권한이나 위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인은 자신의 집단에 새로 진입하려는 부류에게 배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자신에게 요구되는 전문 기량의 연마보다는 사회 지위의 경계를 넘어서는데 더 큰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⁴⁴⁾ 계속 발생하는 통제영 왜학의 처벌 사안과 높은 처벌 빈도는 소통을 포함한 업무 처리 능력은 물론 군진의 규율과 직업 윤리 등의 문제를 노정하는 데, 이것이 조선후기 대외 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시스템의 한계라는 보다 거시적인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다.

한학의 경우 법전 규정에 따랐다면 248년 동안 124인이 파견되었을 것이다. 이중 찾아낸 한학은 약 58인, 비율로는 약 46.7%가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변정을 다룬 각종 보고서 등에 한학은 일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청나라의 배가 표류하여 통제영 한학이 좌수영에 가서 문정한 사건 외에,⁴⁵⁾ 한학을 필요로 하는 사건은

41) 『승정원일기』 1680년 7월 14일.

42) 『비변사등록』 1876년 2월 27일.

43) 『비변사등록』 1823년 12월 13일, 1826년 11월 15일, 1832년 10월 14일, 1876년 2월 27일.

44) 이훈상, 「1851년의 중인 통정 운동과 화원들의 향방」, 244~253면.

45) 18세기 이후 표류와 관련된 기록은 빠짐없이 보고되고 있었다. 따라서 좌수영 부근에 청의 향주 상인의 선박이 일본 나가사끼를 가다가 표류하여 통제영의 한학이 가서 조사했다는 1730년의

일어나지 않았다. 인조는 중국의 표류민에 대비하여 통제영에 한학을 파견하라고 했는데, 이 결정은 통제영의 지정학적 위상에 대한 적절한 판단에 기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통제영에 파견된 한학이 세병관의 기문이나 충렬사의 심원록 등 지역의 기념비적인 기록물에서만 확인되는 것도 흥미롭다. 248년 동안 파견에 걸맞는 공무 처리 사례는 거의 전무한 반면 기념비적인 공간에 이름을 계속 올린 것은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국가가 늘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안겨주는 일종의 현시성은 계속 이어진 반면 공무가 없다시피 한 한학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필요 지역으로 옮기자는 현실적인 제안은 없었다. 이 점에서 갑오경장을 맞아 통제영을 폐지하면서 뒤늦게 한학을 冗員으로 지목하여 감하하기로 한 것은⁴⁶⁾ 이미 너무도 늦은 조치였다고 보아도 좋다.

IV. 19세기 중엽 이후 심약 제도의 파행과 그 역사적 의미

심약은 전국 각지에 18인을 파견했는데, 이 중 군영은 병영과 통제영이 해당한다. 심약의 중요 업무는 진상 약재의 검사와 진상 업무 그리고 구료로서, 감영을 비롯하여 안주의 평안 병영과 함경도의 남병영과 북병영등 병영 세 곳에 이 같은 책무가 부여되었다. 반면 진주, 울산, 강진, 청주, 황주 등 다섯 병영과 통제영은 진상 관련 책무가 없고 단지 구료 업무만 있었다.⁴⁷⁾ 파견지에 따라 보내는 이들의 자격이 다른데 연령과 경력의 편차가 매우 컸으므로 이 같은 원칙이 어느 정도 준수되었는지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

심약은 속관으로서 검률과 마찬가지로 인사고과, 곧 褒貶 대상인 반면,⁴⁸⁾ 왜하,

사안은 한학이 본연의 역할을 한 유일한 사례라 생각된다. 『승정원일기』 1730년 5월 15일.

46) '從來에 外道로 差送하던 審藥·書員·寫字官·譯學 등 冗員을 減下케 하다.' 『官報』 1895년 3월 18일.

47) 『大典通編』 권3 禮典, 獎勸. 그런데 『심약사례』에는 통제영도 진상 조항이 보인다. 『역주심약사례』 하, 81면. 이와 관련하여 『심약사례』의 시기에는 진상이 없었다고 한다.

48) 『승정원일기』 1715년 7월 16일.

한학, 화시군관 등 군관 자격으로 파견된 이들은 포폄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1870년에 통제영으로 검물을 처음 파견하기 전까지 심약은 중인 중 유일한 인사고과 대상이었고 그 결과는 중앙정부에 일 년에 두 차례 보고하여야 했다. 18세기 이전의 보고 기록은 없으나 세병관의 기문에 심약이 빠짐없이 올라있는 것을 통하여 규정에 맞추어 통제영에 파견되었음을 알려준다. 나아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엄격하게 다룬 사례를 통하여,⁴⁹⁾ 이 시기에 심약에 대한 통제도 규정에 맞추어 준수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은 19세기 중엽 이후 크게 바뀌었다. 통제영에서 중앙정부에 올린 19세기 후반의 인사고과 보고서에는 심약이 하나같이 빠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제영 심약의 실태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고문서들이 찾아진다. 1879년에서 1881년 사이에 전의감의 의관들이 올린 세 점의 청원서가 이것인데 그 내용은 이렇다.

강원도 원주 감영은 진상 녹용이 많지 않아 이에 따른 심약의 수입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 유지도 어려웠다고 한다. 진상 책무가 있는 감영은 병영들과는 달리 약재의 진상 과정에서 취할 이득이 있으나 원주 감영은 진상 분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⁵⁰⁾ 그리하여 원주 감영의 심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40년 또는 50년 전에 통제영의 심약도 겸차하도록 바꾸었다는 것이다.⁵¹⁾

문제는 1876년에 일어났다. 원주 감영의 진상 녹용의 양을 늘리면서 더불어 심약도 너넉해졌고 이에 따라 통제영 심약의 자리를 평안도 안주 병영의 심약이 겸차하도록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원주 감영의 녹용 진상 분량을 원래대로 줄임에 따라 통제영의 심약을 안주 병영 대신 다시 원주 감영의 심약이 겸차하도록 제조에 청원했다. 그리하여 논란을 거친 후 통제영의 심약 자리를 원주 감영과 안주 병영의 심약이 반분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고 한다.⁵²⁾

청원서에 따르면 규정에 어긋나는 겸차는 대략 1830년(또는 1840년) 이후 40년(또는 50년) 동안 지속한 셈이다. 1879년 무렵에 마련한 절충안이 통제영이 폐지될 때까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되므로 대략 60년(또는 70년) 동안 편법이 통용된 셈이

49) 『統營啓錄』 1, 「統營啓錄便攷」, 1716년 11월.

50) 李在璿所志, 1879년 1월 『私人文書』 24, 서울대 규장각, 2002.

51) 李鍾林所志, 1881년 2월, 『私人文書』 24.

52) 崔錫鎔所志, 1881년 4월, 『私人文書』 24.

다. 이 기간에 규정대로 통제영에 심약을 파견했다면 그 수는 대략 40명에서 50명이 되지만 극소수를 제외하면 심약이 파견된 기록을 찾을 수 없다.⁵³⁾ 요컨대 심약에 대한 기록이 19세기 전반 이후 사실상 공백인 것은 단순히 관련 기록물이 전승되지 않았다고보다는 70년 동안 통제영의 심약을 안주 병영의 심약과 원주 감영의 심약이 계속 겸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의관들이 올린 소지가 전승되지 않았다면 이 같은 편법이 오랫동안 통용된 것을 알지 못했을 것 같다. 통제영과 관련된 각종 관찬 기록물의 어디에도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편법이 통용될 수 있었을까? 일단 의관들의 합의와 전의감의 제조 등의 묵시적 양해는 중요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편법이 장기간 통용된 것은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1849년부터 1891년까지 진주의 경상도 우병영의 심약에 대한 兵使의 포폄 보고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⁵⁴⁾

우병영의 역대 兵使 11인의 심약 15인에 관한 인사고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심약이 이렇다 할 직무가 없어 한가하며, 둘째 아예 보지도 못할 정도로 자리를 비우며 셋째 자리를 비워도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심약에 대한 인사고과는 할 필요조차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불만이 넘친다.

혹평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두를 ‘上’으로 등제한 것은 아이러니인데, 이와 함께 주목할 사실은 19세기 중엽 이후 병사 11인의 논조가 하나같이 심약을 통제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이렇듯 병사가 심약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진주 우병영의 40여 년에 걸친 인사 고과 기록은 통제영의 심약을 다른 감영이나 병영의 심약이 겸차하는 편법이 실제로 통용되었음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경상도 통제영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원주 감영 등의 심약이 통제영의 심약을 겸차한다면 통제영의 구료 업무는 어떻게 되었을까? 일단 이 같은 파행이 통제영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았을 것 같다. 처음부터 심약 1인이 통제영의 구료를

53) 1830년의 세병관의 기문을 마지막으로 그 후에는 1874년의 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여기에 한학이나 검륜은 올라있으나 심약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충청사의 심원록은 19세기의 것이 모두 전승되고 있는데 1844년에 심원한 심약 鄭麟夏 외에 다른 이들은 찾을 수 없다.

54) 『慶尙右兵營啓錄』 속의 심약에 대한 포폄 기록이 이것인데 이를 일람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진주 경상도 우병영 심약과 포폄 내용

모두 감당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贅邑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에 따라 의료 공급 체계도 발전한 만큼 통제영도 여기에 의존하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⁵⁵⁾

연월일	성명	평가	등제
1849.6.1	庾景厚	서울에 있다가 부친상을 당하였고 新任 심약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올해 춘·하 등 포핍 등제를 행할 수 없음	
1850.6.1	李德求	이미 임기가 지났는데 신임 심약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춘·하 등의 포핍 등제를 행할 수 없음	
1858.6.1	玄光實	직임이 汗漫하니 별로 하는 일이 없어도 방해가 되지 않음	상
1859.6.1	崔漢輔	맡은 일이 한가한 직임이니, 오래 자리를 비워도 방해되는 것이 없음	중
1859.12.1	崔漢輔	사람을 보지 못하였으니 評할 만한 일이 없음	상
1860.6.1	鄭楫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 자리를 오래 비워도 병통이 되지 않음	상
1876.6.1	玄宅健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혹한 評을 하겠는가?	중
1877.6.1	李胤錫	임무가 한가하고 험거워 자리를 오래 비워도 방해되지 않음	상
1877.12.1	李胤錫	직무를 오래 비워도 해로울 것이 없으니 評할 일이 없음	상
1878.6.15	崔承源	특별히 할 일이 없는 職事니 자리를 오래 비우더라도 무슨 해가 되겠는가?	상
1879.1.23	皮熙哲	廩料를 상세히 말하는 것을 보니 條理는 이해하는 듯함	상
1879.6.1	皮熙哲	技術이 참으로 직임을 감당할 수 있으니 評은 前例를 따름	상
1879.12.1	皮熙哲	원래 책임이 적어 한가하여 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혐의하겠는가?	상
1880.6.1	皮秉翼	원래 뚜렷한 職務가 없으니 어찌 평가할 것이 있겠는가?	상
1889.12.1	朴基俊	考課할 때마다 文具가 되고 있음	상
1885.12.1	鄭永淳	직임이 본래 한가하니 평하는 것은 관례를 따름	상
1890.6.1	劉正相	임무가 한가하고 직책이 비어 있으니 사실상 논평할 것이 없음	상
1891.6.1	劉章熙	임무가 이미 바쁘지 않으니 어찌 논평할 것이 있겠는가?	상
1891.12.1	皮熙哲	임무가 汗漫하여 바쁘지 않으니 오래 자리를 비워도 무엇이 방해되겠는가?	상

- 55) 1733년에 고성 의 仇相德(1706-1761)이 눈병을 치료할 약재를 심약에게 샀다는 기록은 주목된다. 심약이 민간인과 약재의 거래를 했음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具相德, 『勝聰明錄』 1733년 5월 3일. 그렇지만 그가 약에 관하여 계속 문의한 것은 통영 영읍의 첨지 李萬根이다. 같은 책, 1734년 4월 3일, 1738년 1월 2일. 부친을 모시고 醫家를 갔다는 기록도 나오는 데 醫家는 앞서 약에 관하여 계속 문의한 이만근을 지칭할 것이다. 1734년 4월 12일. 이것은 18세기 전기에도 영읍의 의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더 컸음을 알려준다. 한편 1823년경에 통제영에는 醫生이 6명, 藥漢이 18명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통제영 편, 『統營誌』, 1823년경, 奎10876, 8면. 이로 미루어 통제영 영읍에는 의료 인력이 최소 24명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95년 통제영 폐지 직전에는 5명의 의생이 1년에 1명씩 돌아가며 근무하고 약한은 1명이 근무하며 이들에게는 料米를 지급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의정부 편, 『統營誌』, 1823년경, 奎12186. 의생이나 약한은 독립된 근무 공간인 醫生廳이 있었다. 같은 사이에 고성부사로 있던 오형묵의 『고성총쇄록』에 의하면 그는 전적으로 지역의 약국이나 의생 또는 다른 지역의 의사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심약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다시 말해서 심약의 부재가 오랫동안 문제가 되지 않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지역사회의 의료 체제의 성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파행이 장기간에 걸쳐 묵인된 사실은 19세기 중엽 이후 통치시스템의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통제영만이 아니라 우병영에게서도 볼 수 있는 심약 파견제도의 장기간에 걸친 파행과 이것을 사실상 버려둘 수밖에 없는 현실은 군사 준비 태세의 이완을 넘어서서 조선왕조 통치 질서를 뒷받침한 행정 전문가 집단의 역할과 위상에 새로운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V. 맺음말

이 연구에서 필자는 중인의 활동의 장을 중앙이 아닌 지방으로 옮겨 이들의 지방 파견제도와 그 실상을 밝히려 했다. 중인 중 상당수가 지방 파견 경험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이들의 파견지가 대부분 상급 군영이나 감영과 같은 상급 행정 기관이라는 점에서 중인의 지방 파견제도는 중앙집권체제의 유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중인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오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제도는 사실상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화원에 대한 사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를 기초로 다른 중인들의 실태로 논의를 확장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지방에서 가장 큰 군사기지인 통제영에 파견된 중인을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중인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통제영 영읍에 세거하는 鎭吏 및 경상도 각 읍의 향리에서 차정한 營吏 등 통제영의 두 이차 집단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조선왕조의 통치 체제와 軍事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돌아보는데 군사 행정을 뒷받침한 세 집단을 하나의 지평에 놓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통제영에 중인들을 파견하는 제도의 전개 과정 및 의의를 밝히고 이어 왜학이나 심약 등의 실상에 집중하여 종래 간과한 중인들의 역할에

없다. 통제영 영읍의 의료 체계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역 의료 체계에서 심약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그 역할이나 비중은 크지 않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논의를 확장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정리하면서 새로운 물음을 덧붙이려 한다.

중인 파견제도는 왜학을 시발점으로 한학과 심약, 화원, 사자관 그리고 검률 등으로 계속 확대되었다. 직책에 따라 파견 목적이 다른데, 특히 화원이나 사자관의 파견제도는 통제영 자체의 요구나 필요성과는 무관한 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도입되고 다른 파견지도 마찬가지였다. 이 제도가 화원이나 사자관의 생계를 보장하여 18세기 이후 문화 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했겠지만, 통제영은 물론 기타 파견지에서 이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나아가 무엇에 이바지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어 왜학을 대상으로 그 실상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왜학은 변방의 현실과 관련하여 통제영에 일찍부터 파송했는데 이곳의 왜학은 표류 왜선의 문정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사안을 처리함과 동시에 처벌 빈도도 가장 높은 자리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업무 처리와 관련한 높은 빈도의 처벌은 중인 개개인의 차원을 넘어 행정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가의 후견 아래 직책을 세습·독점한 중인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고 읽었다. 나아가 관련 공무가 전혀 없다시피 한 한학을 240년 이상 계속 파견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였다.

한편 심약의 경우 19세기 중엽 이후 파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다른 감영의 심약이 겸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다른 군영에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장기간 지속한 것을 사례로 19세기 중엽 이후 중인들을 내적으로는 통제하지 못할 지경임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조선왕조 통치 체제를 뒷받침한 전문가 집단의 이 같은 이탈은 군사 준비 태세의 이완을 넘어서서 조선왕조의 근간의 문제일 것으로 이해하였다.

官과 吏, 士와 吏, 儒와 吏의 이분 구도가 통치 체제의 근간인 조선왕조에서, 중인은 경아전이나 향리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吏의 범주로 분류되며 업무 또한 유사하다. 그런 만큼 지방 파견 중인들의 업무는 향리로부터 차정하는 감영이나 군영의 영리들의 그것과 많이 중복되어 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는 중인을 지방에 파견하는 제도를 계속 확충하였다. 그렇지만 업무 내용이나 규정은 상세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업무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부실한 것 같이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지방에 파견된 중인들의 전문 행정가의 역할은 찾아지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다.

특히 왜학의 빈번한 처벌 사례는 조선후기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극도로 민감할 정도의 긴장을 보여주는 데 이와 달리 심약은 사실상 파행 일변도라 할 정도로 변통이 허용되는 등 제도 운영의 양극성을 보여주는 데 19세기 중엽 이후 이 같은 현상은

두드러진다. 중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서들에 비하여 고도의 행정 전문가로서 선발되고 양성되었다. 그렇지만 이들이 기대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역량을 가졌는지 나아가 조선왕조가 이들을 충분히 활용할 환경이나 기회를 만들었는지, 이 모두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른 군영이나 감영에 대한 실태도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통제영에 파견된 중인들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연구를 돌아볼 때 그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참고문헌

- 『官報』
『大典通編』
『六典條例』
『私人文書』 24,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承政院日記』
『尋院錄』, 통영, 충렬사 소장
『日省錄』
『推鞠日記』
『統營啓錄』, 東京, 東洋文庫 VII-2-243
비변사 편, 『慶尙右兵營啓錄』 奎15103
_____, 『東萊府啓錄』, 奎15105
_____, 『비변사등록』
승정원 편, 『同文彙考』
_____, 『萊營文牒』, 奎12469
_____, 『事變日記』, 장서각 K2-216
『尋院錄』 1~15책, 통영, 충렬사
예조 편, 『告還謄錄』 奎12921
_____, 『譯官上言謄錄』, 奎12963: 이현주, 『역관상언등록연구』, 글항아리, 2016
_____, 『弔慰差倭謄錄』 奎12899
의정부 편, 『統營誌』, 1895년, 奎12186
_____, 『統制營啓錄』 奎15101
典客司 편, 『告訃差謄錄』, 奎12896
_____, 『告訃差謄錄』, 奎12896
_____, 『島中失火』, 奎12914
_____, 『邊例集要』, 奎貴2089
_____, 『別差倭謄錄』, 奎12871
_____, 『倭人求請謄錄』, 奎12955
_____, 『裁判差倭謄錄』 奎12957
_____, 『典客司謄錄』, 奎13052
_____, 『典客司別謄錄』, 奎12961
_____, 『通信使謄錄』, 奎12870
_____, 『漂倭入送回謝謄錄』, 奎12920

_____, 『漂人領來差倭謄錄』, 奎12954

_____, 『漂人領來差倭謄錄』, 奎12954

_____, 『漂人領來謄錄』, 奎12956

전의감 편, 박훈평 역주, 『譯註 審藥事例』 상·하, 퍼플, 2015년

정갑섭 역, 『國譯 統營郷土誌集成』, 통영문화원, 2009

『鎮南邑誌』, 1900년경, 국립중앙도서관 古2758-5

『統營郡史』, 1986

『통영군지』, 1991

『통영시지』 3권, 2018

통제영 편, 『統營誌』, 1823년경, 奎10876

형조 편, 『秋曹決獄錄』 奎15148

姜渭聘, 박훈평 역, 『譯註 蕙局志』, 퍼플, 2015

具相德, 『勝聰明錄』 1725년 7월~1761년 8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995

金健瑞, 하우봉·홍성덕 역, 『국역 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1998

金基洛 編, 『嘉齊事實錄』, 1865,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57-가61

盧尙樞, 『盧尙樞日記』 4, 한국사료총서 49, 국사편찬위원회

李碩寬, 『統營日記』, 1714년 7월~11월,奈良県 天理市, 天理大學 今西龍文庫 221-タ93

吳玄默, 이성우 역, 『國譯 固城叢瑣錄』 1893년 1월~1894년 11월, 고성문화원, 2007

李雲龍, 『居營日記』, 1605~1606, 규장각 寄託 5

_____, 『啓本謄錄』, 1605~1607, 규장각 寄託 6

洪大容, 『湛軒書』

박훈평 편, 『조선시대 의관 총목록』,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손숙경, 『천주교 수용자 중인 김범우의 밀양 유배와 역관 현덕윤 가계의 밀양 이주 그리고 관련 문서』,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7

손숙경·박지현·허모영, 『조선후기 이후 근현대기 통영 충렬사와 이순신장군 祭禮, 그리고 전승 기록물 I』, 석당학술원, 2019

이훈상, 『朝鮮後期の 郷吏』, 일조각, 1990

_____, 『조선후기 이후 근현대기 통영 충렬사의 尋院, 이순신장군 祭禮, 그리고 그 기록물 尋院錄 I』, 석당학술원, 2019

_____, 『조선후기 통제영의 사례책들과 세병관의 기문들』, 석당학술원, 부산경남지역고문서총서 X: 2014

_____, 『조선후기 통제영의 충렬사와 고문서』, 동아대 석당학술원, 부산경남지역고문서총서

Ⅷ: 2014

에드워드 와그너, 이훈상 외 역, 『조선왕조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

김동철, 「17~19세기 동래부 소통사의 편제와 대일활동」, 『지역과 역사』 17, 2005

_____, 「동래부 小通事 金采吉 관련 준호구와 그의 개항 전후 활동」, 『한국민족문화』 69, 2018

김상현, 「統制營 在地軍官의 대두와 家門 형성」,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2017

박훈평, 「조선후기 절사의관에 대한 연구」, 『한국의학사연구』 31-1, 2018

손숙경, 「조선후기 중인 역관의 동래 파견과 川寧 玄氏 현덕운 역관 家系의 분화, 그리고 중인 金範禹 후손들의 밀양 이주」, 『역사와 경계』 100, 2016

신세완, 「18~19세기 의주부 소통사의 존재양상과 활동」, 『지역과 역사』 41, 2017

이진욱, 「한말 식민지기 통영 충렬사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새로운 추모의례 조직」, 『사회와 역사』 121, 2019

이훈상, 「조선후기 지방 파견 화원들과 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지방 형상화」, 『동방학지』 144, 2008

_____, 「조선후기 충청도의 營吏와 鄕吏, 그리고 이들의 기록물」, 『고문서연구』 50, 2017

_____, 「조선후기 통제영 영읍의 발전과 진리 집단의 형성」, 『역사학보』 249, 2021

_____, 「조선후기 통제영의 영방과 영리 그리고 이들의 출자」, 『진단학보』 135, 2020

_____, 「1851년의 중인 통청 운동과 화원들의 항방」, 『역사학보』 238, 2018

A Study on the Dispatch System and the *chungin's* role in Regional Naval Headquarters (*T'ongjeyǒng*) of Late *Joseon* Dynasty

Lee, Hoon-sang

The paper is a study on the local dispatch system of the *chungin* in late *Joseon* Dynasty. The system of dispatching not a few *chungin* who live in the Capital Seoul to the provinces seems to have worked for maintaining the centralized regime more than for the local governance. Based on the examples of the largest military base in the province, Regional Naval Headquarters (*T'ongjeyǒng*), this study focuses particularly on the reality of the inspectors of medicine(*Simyak*) and Japanese translator-interpreters (*Waehak*). It is noted whereas these *chungins* were selected through reasonable examination systems, the details of the regulations or of the evaluation system were not fully prepared. Specifically after the mid-19th century, dispatched *chungins* in most of military bases of local areas were not properly controlled systematically. This study on the role of dispatched *chungins* and the dispatch system confirms the weakness as well as reasonableness of *Joseon* Dynasty's ruling system.

Key Words : chinese translator-interpreters(*hanhak*), *chungin*, *chungin* dispatch system, Government artists(*hwawon*), Inspector of medicine(*Simyak*), Japanese translator-interpreters(*waehak*), military administration, Scribes(*sazakwan*), Regional Naval Headquarters(*T'ongjeyǒng*)

부록

통제영 파견 審藥·譯學·畫師·寫字官·檢律 등의 편람과 활동 사안

일러두기

- 일람표는 먼저 크게 통제사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이어 다음과 같은 세 범주의 출전을 기준으로 다시 셋으로 나누었다. 첫째 통영 세병관의 기문(■), 둘째 통영 충렬사 소장의 『尋院錄』(□), 그리고 기타 기술관들의 활동 기록을 찾을 수 있는 각종 관찬 자료들이다. 일람표 속의 일자는 통제사와 기술관들의 활동 연월일을 수록하였다. 이들의 출전을 모두 밝혔다. 각별히 세병관 기문(■)과 통영 충렬사 소장의 『尋院錄』(□)은 최근 필자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훈상, 『조선후기 통제영의 사례책들과 세병관의 기문들』,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부산경남지역고문서총서 X, 2014; 『조선후기 이후 근현대기 통영 충렬사의 尋院, 이순신장군 祭禮, 그리고 그 기록물 尋院錄 I』, 석당학술원, 2019. 이외에 다음도 도움이 된다. 손숙경·박지현·허모영, 『조선후기 이후 근현대기 통영 충렬사와 이순신장군 祭禮, 그리고 전승 기록물 I』, 석당학술원, 2019.
- 출전 중 일부는 약자로 표기하였다. 『告』는 『告訃差謄錄』, 『東』은 『東萊府啓錄』, 『邊』은 『邊例集要』, 『別』은 『別差倭謄錄』, 『事』는 『事變日記』, 『審』은 『尋院錄』, 『承』은 『承政院日記』, 『譯』은 『역관상언등록』, 『倭』는 『倭人求請謄錄』, 『日』은 『日省錄』, 『典』은 『典客司謄錄』, 『統』은 『統制營啓錄』, 『通』은 『通信使謄錄』, 『漂倭』는 『漂倭入送回謝謄錄』, 『漂人』은 『漂人領來謄錄』, 『漂差』는 『漂人領來差倭謄錄』이다.
- 심약의 경우 성명 다음에 주기한 숫자와 ‘의’는 각기 통제영 파견 당시 연령과 의과 급제를, ‘▲’ 표시는 의원 이력은 찾아지지만 의과 급제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 표시는 의원 이력이나 의과 급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방목 등을 찾았으나. 특별히 다음의 최신 연구 성과를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박훈평 편, 『조선후기 의관 총목록』,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 『尋院錄』(□)에는 본관 등을 기재하는 관행 덕분에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중인들

의 본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을 심원 연대와 함께 적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심약은 李萬赫(무장, 1749), 崔宗衡(월성, 1752), 李盛澤(안산, 1758), 洪愼德(남양, 1760), 洪燁(남양, 1815년), 朴道明(밀양, 1816) 등 6인, 한학은 李命嵩(금산), 李景弼(한양), 李鎭崑(태안), 鄭文保(蓬山), 卞志沆(1844~?, 초계, 1871)는 5인, 화원은 崔得賢(흥해), 金建種(개성, 1814) 등 2인, 검율은 趙得淵(평양, 1784), 劉國亮(한양, 1802), 李善教(1826~?, 정선, 1870)등 3인으로 모두 16인에 이른다. 심원록은 일부가 결질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전거	통제사			審藥	譯學		畫師 軍官	寫字 軍官	檢律
	부임 연월	이임 연월	성명		倭學	漢學			
■ 1611(광해군3).7	1609.7	1611.7	李慶藩	金世榮★ *거주지 청도					
『啓本膳錄』1605.11.30, 1607.5.6	1605.9	1607.6	李雲龍	鄭大畜?의 宋福門(5.6)★					
■ 1615.7	1614.4	1615.7	成佑吉	李弘★ *救療官 ⁵⁶⁾					
■ 1617.4	1616.3	1617.4	柳止信	金興鼎 ⁵⁷⁾ ▲ 趙大吉★					
『承』1629.8(인조7)	1627.8	1629.7	李沆	方時發 ⁵⁸⁾ ▲					
■ 1631.8	1629.7	1631.7	具宏	方時發▲ 車挺元?의 李聖福 ⁵⁹⁾ ▲	李豪▲ 梁孝善?倭 玄克逸▲				
■ 1640.11	1639.4	1640.11	柳琳	鄭繼立30▲ (+무과 1637)	朴亨元31倭(+漢) 李芳吉43倭				
■ 1656.12	1656.1 1	1656.12	柳赫然	李時龍▲ 李廷榮 24의	張偉敏▲ 洪禮吉▲	金天元33漢 李義逸43무★ (1637 무과)			
■ 1662.3(현종3)	1660.3	1662.2	朴敬祉	金應業▲ 趙興晉32의 李偉然26의 (+漢學 1657)	韓信國★ 金弘軾?譯	李時立23★ (1684 무과)			

조선후기 증인의 지방 파견제도와 그 실상

『承』 1664.9	1664.3	1666.9	鄭傳賢			譯學訓導 李時立★			
■ 1669.3	1667.1	1669.3	李枝馨	李柱臣37의	元章立63倭	尹廷錫★			
■ 1670.3	1669.8	1670.3	柳斐然	張萬堅▲ 李後靖39★ (+漢學 1650)	金時聖55倭 韓信國★	尹興殷★			
■ 1679.6(숙종5) ⁶⁰⁾	1679.6	1680.10	金東屹	韓時達▲ 李柱臣37의	申之淳?	金得宗★ 鄭士僑?漢			
『譯』 1680.윤8.21	1679.6	1680.10	金東屹		申之澤				
■ 1684.2	1682.3	1684.2	元相	李熙養▲ 張萬堅▲ 辛輔漢★	韓天錫?倭 金應潤?倭 吳允文	方必恒45漢 吳克興 36漢·清			
『譯』 1688.4.16, 8.16	1687.10	1689.6	李世選		尹世興(1661~?)	張遠翮43漢			
■ 1691.5	1689.6	1691.5	申汝哲	李熙任★ 李斗萬▲ 金俊傑?의	南萬敵	張遠翮43漢 秦是英 ⁶¹⁾ ?漢			
■ 1691.6	1691.5	1691.6	李聖資	金俊傑?의	南萬敵	張遠翮43漢			
■ 1694.7	1693.4	1694.7	睦林奇	邊永泰?의	鄭繼周익	李行廉32漢			
『邊16』 1701.4 『典1』 1701.8.27	1701.5	1701.11	柳星樞		張漢弼 『邊16』 鄭郁 『典1』★				
■ 1702.3	1701.5	1701.11	柳星樞	邊昌潤?의	鄭郁★ 金斗元★	金萬碩32漢			
■ 1703.1	1701.11	1702.1	元德徽	邊昌潤?의 車道亨26의	金斗元★ 黃聖壽▲ ⁶²⁾	金萬碩32漢 鄭士僑?漢			
『別差7』 1703.12.6, 12.21	1702.2	1704.4	洪夏明		통영왜학 玄德潤				
『倭人7』 1705.12.3	1705.8	1706.4	李尙鼐		통영왜학 李枝郁				
『島中失火』 1706.10.13	1706.4	1707.10	南五星		金益鍊				
■ 1707	1706.4	1707.10	南五星	柳東陽★ 金益剛▲	金益鍊 金時璞46倭	鄭世豪46漢 崔萬益 ⁶³⁾ 漢			
■ 1708.10	1707.10	1708.10	吳重周	前主簿 金益剛▲ 前奉事 張翊周 (1711 의)	前參奉 申之瀨	前僉正 崔萬益?漢 前主簿 邊相諱42漢 前直長 趙得賢43漢			
『別差』 1709.12.29. 『邊4』 1710.4	1708.10	1710.9	鄭弘佐		거제 왜학 金時璞49倭				
『通5』 1711.1.9. 『通6』 1711.9.27	1710.9	1711.11	趙爾重		거제 왜학 張萬奎(1.9) 梁時雄(9.27)				

『漂人1』 1712.7.8, 8.10 『別差』 1712.12.6. 『通7』 1713.2.17	1711.11	1713.5	金重元		거제 왜학 鄭東起(7.8, 8.10) 李枝郁(12.6, 2.17)				
『告還謄錄』 1713.11.14 『漂人』 1714.3.22. 『漂倭1』 1714.4.4	1713.5	1714.7	李宇恒		梁時雄				
■ 1714.6	1713.5	1714.7	李宇恒	黃世耆32의 崔湜▲	梁時雄64)▲張萬奎	千載萬41漢 金萬錫44漢	許祐 李雲柱		
『統營日記』 1714.7.6, 7.27, 8.2, 8.16, 9.4, 9.17 『通7』 1715.1.22	1714.7	1714.11	李錫寬	崔湜(7.6)▲	張萬奎(7.27, 9.4, 9.17)	金萬錫(8.12) 申泌(8.2)★			
『備』 1715.10.18. 『漂人』 1716.2.28 『別差』 1716.9.2, 11.8, 12.20	1715.2	1717.3	尹懿		鄭東起(1715.10.18.) 梁時雄(2.28, 9.2, 11.8, 12.20)				
■ 1717.9	1715.12	1717.3	尹懿	蔣世福★ 玄厚綱? (+1692 籌學 취제)		申泌★ 金聲和?역	金斗樑		
『漂人』 1717.8.28, 9.4 『漂倭』 1717.10.11	1717.4	1719.3	徐春輔		鄭東起(8.28) 거제 소통사 金宗間(9.4, 10.11)				
■ 1718.10	1718.4	1718.9	吳重周	李萬祥39의		趙得賢43漢 閔道興53漢	金麗興		
『統營啓錄』 1718.11 『典別』 1719,10.19 『日』 1720.1.17	1718.9	1720.1	金重器	李萬祥 (1718.11)	金得微 梁時雄(10.19) 소통사 李承千(1.17)	閔道興 (1718.11)			
『甲斐差倭謄錄』 1720.10.9 『裁判差倭謄錄』 1720.12.27 『倭人求請謄錄』 1722.8.23 『漂差』 1721.윤6.12, 1722.11.29	1720.1	1722.1	李壽民		鄭東起▲ (10.9, 12.27, 8.23, 11.29) 玄傑(11.29) 소통사 張致丁(12.27) 金行男(윤6.12)				
■ 1723.2(경종 3)	1722.1	1723.3	李鳳祥	黃命耆41의	鄭東起▲	金命錫46漢	金孝成		
『漂人』 1723.9.13, 12.13	1723.3	1724.4	申翊夏		玄傑 소통사 白哲同(9.13) 李承千(12.13)				

56) 세병관의 기문에 구료관으로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그는 당시 구료관 자격으로 파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중인의 지방 파견제도와 그 실상

『邊16』 1724.7월 『裁4』 1724.9.13, 9.25, 12.18 1725.12.19(영조1)	1724.4	1725.2	尹五商		玄傑 梁時雄 소통사 金麗河(9.13, 9.25) 李承千(12.19)				
『漂倭』 1726.6.25	1725.6	1726.12	李載恒		金壽天▲				
『邊16』 1729.4월	1727.12	1729.12	金滄		玄傑▲				
『邊16』 1730.1월, 5월 『別差』 1731.5.9	1729.12	1731.5	李遂良		鄭東起▲				
『漂人』 1731.6.19, 7.4, 8.7, 8.22 『承』 1731.11.30, 1732.11.23 『實錄』 *1788.3.10. 『典別2』 1733.1.6, 4.6	1731.5	1733.4	鄭壽松		鄭東起『漂人』 梁時雄▲ 黃再河▲ 金鼎弘 소통사 金有望(『實錄』* 1732) 劉有實(『典別2』 1.6) 曹厚根(『典別2』 4.6)				
『漂人』 1733.8.22 『別差』 1734.1.20, 4.11, 8.11 『裁判差倭謄錄』 1735.1.10 『事5』 1734.7.7, 9.7 『事6』 1734.12.24., 1735.4.16, 6.20	1733.6	1736.4	金濬		鄭東起(8.22, 4.11, 7.7, 8.11, 9.7) 韓壽岱 소통사 曹厚根(8.22) 金泰興(1.20) 曹厚根(7.7) 金信永(9.7, 12.24) 曹仁根(4.16) 曹厚根(6.20)				
『承』 1737.3.7 『典別4』 1737.5.22, 10.5	1736.5	1738.3	尹宅鼎		黃再河▲ 朴震豪				
■ 1738.2	1737.5	1738.3	尹宅鼎	韓益泰58의 田夏豐★	李槥40(倭65)	朴麟瑞39漢	崔東績	許俊	
『事7』 1738.4.28, 9.9, 10.21, 11.5	1738.3	1739.7	具聖益		朴震豪 소통사 曹厚根 李承淡 (10.21, 11.5)				
■ 1739.7	1738.3	1739.7	具聖益	許伋▲ 金時亮▲ 吳績興▲		朴麟瑞39漢 李世樸★	許俊	咸世輝	
『承』 1740.1.20. 3.27, 『典別4』 3.27 『備』, 『邊16』 1740.윤6	1739.7	1741.3	趙敬		趙昌基(1.20, 3.27) 朴震豪(1740.윤6) 소통사 李承淡 曹厚根 『邊16』				

57) 『승정원일기』 중 1614년 7월 18일 기사에 그는 醫員 亨難元從三等錄勳으로 나옴.

『邊16』 1741.5 『事8』 1741.6.10. 『典』 1743.2.14	1741.3	1743.3	宋徵來		劉克愼 소통사 朱五乙(6.10) 金順貴 『典』				
『口1』 1743.3	1743.3	1744.3	李玕		玄泰箕?왜				
『典8』 1743.2.14, 4.10, 1744.2.12, 2.26, 3.3 『事9』 1744.5.15, 9.11, 11.3 『典別5』 1745.1.7, 3.29, 4.15	1744.3	1745.11	李義豐		金震赫 소통사 金行男 金元行(2.16) 金原正(2.26) 金世貞(3.29, 4.15)	丁大成 (典別5)			
『日』 1746.2.17. 『事10』 1746.7.14, 8.20, 9.1 『典別7』 1747.5.19	1745.12	1747.7	李彦祥		金震赫 劉克愼 金禹迪(8.20) 李振豪 『典別』 통사 權順澤 『日』 李滄司(7.14, 8.20)	金麟瑞(8.24)			
■ 1747.10	1745.12	1747.7	李彦祥	金遇瑞31의 吳績興▲		李命高39漢	玄載恒 元命福		
『通11』 1747.8.28, 9.11, 10. 28, 1748.2.20, 2.28, 윤7.25 『典別7』 1748.8.15, 11.12 『通11』 1748.8.15. 『典別8』 1749.1.21	1747.8	1751.2	鄭隣述		朴震豪(1747.8.28, 9.11, 10.28) 李昌錫(1748.2.20, 2.28, 윤7.25) 金大昌(1748.8.15, 11.12, 1749.1.21) 소통사 李永郁(8.28) 金明男(윤7.25) 李榮郁(2.20) 金渭彩(11.12, 1.21)			金天秀 (1748. 8.15)	
『口2』 1749.12.7	1749.9	1751.2	鄭隣述	李萬赫76▲ (+1692 籌學 취재)		朴守豐66)★			
『口2』 1751.6.22, 1752.3.22, 3.28, 8.18	1751.2	1753.4	具善行	崔宗衡29의 (3.22)		李命高45漢 (3.28)	趙廷璧 (6.22) 張顯周 (8.18)		
『告訃差謄錄』 1752.3.1 『典2』 1752.12.22, 1753.1.25, 3.26, 4.27	1751.2	1753.4	具善行		朴震豪(3.1) 劉克化(12.22, 1.25, 3.26. 4.27) 소통사 權順澤(3.1, 12.22, 1.25, 3.26, 4.27)				

조선후기 중인의 지방 파견제도와 그 실상

■ 1753.4	1751.2	1753.4	具善行	前主簿 朴萬禧★ 鄭瑞羽▲		朴守豐★ 前判官 李命嵩 ⁴⁶ 漢	趙廷璧 元命福		
『典2』 1753.4.28, 7.26, 10.25, 11.14, 11.8, 11.10, 11.28	1753.4	1754.3	趙東漸		劉克化(4.28, 7.26, 10.25, 11.8, 11.10) 소통사 權順澤(4.28) 金重已(金仲已? 7.26, 10.25) 徐正右(11.10, 11.28)				
『典2』 1754.3.8, 3.11 윤 ⁴ 2.22, 5.7, 5.18, 7.23, 8.6, 8.28, 11.1, 11.28, 12.29	1754.3	1755.2	金潤		劉克化(3.8, 3.11, 윤 ⁴ 2.22, 5.7, 5.18) 鄭東俊 소통사 權順澤(3.8, 3.11, 윤 ⁴ 2.22, 5.7, 5.18)				
■ 1755.7	1755.3	1755.5	李章吾	鄭瑞羽▲		張俊★	金弼欽		
『典2』 1757.1.8, 정 ²⁴ , 8.1, 9.6, 3.13, 4.30, 7.19, 7.27, 8.16, 9.1, 9.6, 9.26, 10.18, 11.24	1755.7	1757.11	李景喆		金璽 소통사 李亥郁 金允貞(7.19, 7.27) 劉聖德(8.16, 9.1, 9.6, 9.26, 10.18, 11.24)				
■ 1757.10	1755.7	1757.11	李景喆	朴萬禧★ 崔光台▲ 金重瑗 ²⁷ 의 李盛澤▲		張浚★	元德瑞		
『典2』 1758.1.10, 1.24, 3.24, 4.10, 4.28	1757.11	1759.8	吳琰		金璽 소통사 李永郁(*각사등록에 李永邵로 탈초하였으나 李永郁이 맞을 것임)				
『□2』 1758.4.2				李盛澤▲		金必瑞	金光白		
『典2』 1758.6.20, 6.30, 7.7, 7.25, 8.25, 9.11, 9.21, 10.25, 11.29, 12.18, 1759.1.1, 6.4, 6.16, 7.12, 7.19, 8.20 『事16』 10.22	1757.11	1759.8	吳琰		劉克和 소통사 俞命才(6.30, 7.7, 7.25) 徐正輝(10.25, 11.29, 12.18, 1759.1.1) 金德重(6.4. 6.26, 7.12) 金大成(7.19) 徐正輝(1759.10.22)				

■ 1759.12	1757.11	1759.8	吳琰	主簿 李成澤▲ 前僉正 金鼎熙47의 主簿 崔光台▲		主簿 金必瑞 58漢 李禧益?(+1 736 籌學 취재)	金光白		
『典2』 1759.12.12 『邊』 1760.2	1759.12	1760.8	李潤成		劉克和(12.12) 소통사 徐正輝(12.12) 俞命才(1760.2)				
『口2』 1760.12.8	1760.8	1762.6	李泰祥	洪愼德41의					
『典3』 1760.8.5. 『通』 1760.12.6, 1761.3.19, 1762.4.9	1760.8	1762.6	李泰祥		金履完(8.5, 12.6, 3.19, 4.9) 소통사 白斗間(8.5) 李東彩(12.6, 3.19) 李永郁(4.9)				
■ 1762.8	1760.8	1762.6	李泰祥	洪愼德41의 洪達泳▲		李禧益?籌 (1736 취재) 金壽郁27漢	張子澄 金德九		
『事19』 1762.10.29 『通』 1763.1.15, 2.6, 5.7, 9.27, 10.30, 12.3, 1764.1.17, 2.15, 3.6, 4.19, 『典3』 8.26, 10.29, 12.25	1763.1 0	1765.1	鄭汝稷		金履完(10.29, 1.15, 2.6, 5.7, 9.27, 10.30) 洪愼儀(12.3, 1.17, 3.6, 4.19, 8.26, 10.29, 12.25) 소통사 李永郁(10.29, 1.15, 2.6, 5.7, 9.27, 10.30, 12.3) 劉世德(1.17, 2.15, 3.6, 8.26) 白斗弘(10.29) 李永郁(12.25)				
『典3』 1765.2.27, 윤2.17, 3.2, 3.13, 3.28, 4.16, 8.11, 8.18, 9.9, 9.13, 9.24	1765.2	1766.6	尹泰淵		洪愼儀 소통사 李永郁(1765.2.27, 윤2월17, 3.2, 3.13, 3.28, 4.16) 白斗弘(8.11, 8.18, 9.9, 9.13, 9.24)				
『事24』 1767.8.7	1766.6	1768.3	李杜國		韓潤禧 소통사 金聖得				

조선후기 중인의 지방 파견제도와 그 실상

■ 1768	1766.6	1768.3	李柱國	*기문 훼손		*기문 훼손	韓宗裕 趙廷璧		
■ 1769.1	1768.5	1769.1	李漢膺	李盛澤▲		尹命世★?	趙廷璧		
『典3』 1769.정.8, 1.27, 2.21, 3.13, 4.5, 4.8, 4.20, 5.14, 6.7, 8.10, 8.28, 10.11, 11.20, 12.4, 1770.2.20, 3.25, 4.15, 5.11, 5.26, 5.28, 7.12, 9.28, 10.12, 11.4, 11.19	1769.1	1771.1	李國賢		洪慎儀 韓閔禧(12.4~) 소통사 李東采, 李永郁(3.13) 裴甲宗(6.7, 8.10, 8.28) 李業司(10.11, 11.20, 12.4, 2.20, 3.25) 金貴才(4.15, 5.11, 5.26) 裴甲宗(7.12, 9.12, 9.28) 徐正輝(10.12, 11.4, 11.19)				
『典3』 1771.1.14, 1.20, 1771. 2.9, 3.8, 3.20, 4.17, 6.13, 7.26, 8.17	1771.정	1771.2	張志恒		韓潤禧 소통사 白斗弘				
『典3』 1771. 2.9, 3.8, 3.20, 4.17, 6.13, 7.26, 8.17, 9.13, 9.27, 11.16 『典4』 1772.1.7, 1.27, 2.18, 2.25, 3.18, 4.9, 4.16, 4.18, 4.25, 5.29, 7.14, 7.29	1771.2	1772.9	元重會		韓潤禧 洪慎儀 소통사 金貴才(2.9, 3.8, 3.20, 4.17, 6.13, 7.26, 8.17) 李泰萬(9.13) 朴泰渭(9.27, 11.16, 1772.1.7, 1.27, 2.18, 2.25) 金聖得(3.18, 4.9, 4.16, 4.18, 4.25, 5.29, 7.14, 7.29)				
『典4』 1772.9.18, 11.16, 12.11, 1773.2.7, 윤3.1, 5.26, 8.10, 9.18, 9.27, 11.4, 12.5	1772.9	1774.7	趙濟泰		洪慎儀 姜泰運 소통사 金聖得(9.18, 11.16) 徐正輝(12.11, 2.7) 崔致永(3.1, 5.26, 8.10, 9.18, 9.27, 11.4, 12.5)				
『典4』 1774.7.12, 8.13, 9.3, 11.3, 11.18, 12.17, 1775.1.17, 2.2, 3.29 『事29』 1775.1.30	1774.7	1775.4	具顯謙		姜泰運57(委)(1.30) 소통사 徐正輝(8.13) 崔致永(9.3, 11.3) 金聖得(11.18, 12.17, 1.17, 2.2) 崔致岭(3.29)				

『典4』 1775.6.6, 7.4, 9.11, 10.6, 10.28, 11.25, 12.19, 1776.1.1, 1.24, 2.1	1775.4	1776.4	趙 崐	黃璫(10.6, 10.28, 11.25, 12.19, 1.1, 1.24, 2.1) 소통사 崔致齡(6.6, 7.4, 9.11) 金聖得(10.6, 10.28) 裴甲宗(12.19, 1.1, 1.24, 2.1)				
『典5』 1776.7.27, 8.4, 8.18, 9.30, 11.9, 12.23, 1777(정조1)1.24, 1.28, 3.6, 4.12	1776.6	1777.4	李邦綏	黃璫(7.27, 8.4, 8.18, 9.30, 11.7) 韓潤禧 소통사 崔致齡(7.27, 8.4, 8.18, 9.30) 徐正輝(11.9, 12.23.1.24) 金聖得(1.28, 3.6, 4.12)				
『典5』 1777.6.2, 6.16, 6.26, 8.6, 9.19, 10.14, 1778.3.20	1777.5	1778.6	李昌運	韓潤禧 소통사 金聖得 金有聲(3.20)				
『典5』 1778.8.15. 9.26, 10.23, 11.26, 1779.1.25, 2.8,	1778.9	1779.3	李景懋	韓潤禧 李渙 소통사 李業同				
『典5』 1779.4.25., 6.19, 8.25, 11.19, 1780.1.6, 2.5, 2.13, 6.11, 8.25, 9.10, 10.4, 11.6 『事33』 11.30 『典6』 1781.2.4, 2.26, 4.12	1779.3	1781.4	徐有大	李渙(4.25, 6.19) 玄商稷 소통사 李業同(4.25, 6.19, 8.25) 金有聲(11.19, 1.6, 2.13, 6.11) 金世萬(8.25, 9.10) 金潤貞(10.4, 11.6, 12.3, 2.26, 4.12)				
『□3』 1781.2, 1783.3.10						張觀周 崔得賢 □ 67)		
『典6』 1781.7.6, 8.23, 9.9, 9.19, 10.7, 10.20, 1782.2.28, 3.10, 5.11, 8.26	1781.4	1783.1	具明謙	玄商稷 鄭思博(3.10, 5.11, 8.26) 소통사 金重鼎(7.6, 8.23, 9.9, 9.19, 10.20, 2.28) 金世萬(3.10, 5.11)				

조선후기 중인의 지방 파견제도와 그 실상

『典6』 1783.1.7, 2.19, 6.23, 7.17, 9.19, 9.21, 11.27, 12.13, 1784.3.9, 4.30, 5.22, 6.21, 9.20	1783.1	1784.2	李漢昌		金德享 林瑋茂 李學洙 소통사 金有聲(1.7) 朴遇春(1.7, 2.19, 6.23, 7.17, 7.21, 9.19, 9.21, 11.27, 12.13) 金和聲(3.9) 朴遇春(4.30, 5.22, 6.21, 9.20)				
『□3』 1783.3.10, 1784.8.18	1783.1	1784.12	李漢昌			玄載章 64漢(3.10) 李景弼4 8漢(8.18)			(趙得淵 ⁶⁸) (8.18)
『日』 1784.7.4. 『邊』 1784.12	1783.1	1784.12	李漢昌		卞之欽 『日』 崔國楨 『邊』 소통사 金有聲 『日』				
『典7』 1785.1.25, 2.10, 2.28, 5.23, 7.10, 8.10, 8.18, 9.13, 9.15, 11.9	1785.1	1785.12	李邦一		鄭思鈺 丁樂升 소통사 朴逢春(1.25, 2.28, 5.23, 7.10, 8.10, 8.18, 9.13, 9.15, 11.9)				
『日』 1786.6.20, 6.21, 윤7.4 『邊』 1786.윤7 『事』 1786.12.12 『典』 1787.2.21, 2.29	1786.7	1787.4	柳鎮恒		丁樂升 『日』 金亨禹 『邊』 韓宗昌 소통사 金有聲(6.20, 6.21, 윤7.4) 金世萬 『邊』 朴遇春(2.21, 2.29)				
『事36』1788.2.4. 『邊』 1788.2 『日』 1788.3.10 『典』 3.20金有聲	1787.5	1788.3	趙心泰		韓宗昌 『事36』 韓宗正 『日』 소통사 朴遇春 『日』 金日成(3.10), 金有聲(3.20)				
■ 1788.3	1787.5	1788.3	趙心泰	鄭允吉 ▲ 崔孝達 ★		金信述45漢	卞光郁	崔道吉	
『典7』 1788.5.21, 7.7, 10.21, 11.28, 1789.1.18, 3.15	1788.3	1789.3	李漢豐		卞光五 소통사 裴淑昌 李福采(10.21, 11.28) 裴淑文(1.18, 3.15)				
■ 1789.3	1788.3	1789.3	李漢豐	崔孝達 ★ 尹愿 ★	卞光五	金信述45漢 李時升23漢	卞光郁 李思集	崔道吉 彭鏡大	

58) 『승정원일기』 중 1629년 8월 10일에 경상도 심약으로 나옴.

59) 본관은 안산. 『승정원일기』에는 1629년 12월 21일에 혜민서의 내국월령제약관, 1646년 11월 12일

『典7』 1789.5.7, 5.20, 7.15, 8.18, 10.10, 1790.1.9, 2.23, 8.8, 10.29, 12.10, 1791.1.15	1789.3	1791.1	申膺周	卞光五 劉學老(8.8, 10.29) 尹德祚(12.10) 통사 裴淑文(5.7) 金世萬(5.20, 7.15, 8.18, 10.10, 1790.1.9, 2.23) 金應淵(8.8, 10.29, 12.10, 1791.1.15)				
『典8』 1791.8.5., 9.16, 10.26, 11.19, 12.12, 1792.1.27, 2.16, 2.28, 7.16, 8.21, 11.26, 12.28, 1793.1.28, 4.3, 4.12	1791.4	1793.2	李潤慶	尹德祚 卞光五(11.26, 12.28, 1.28, 4.3, 4.12, 6.8) 소통사 金世萬(1791.8.5., 9.16) 裴淑文(10.26, 11.19, 12.12, 1792.1.27, 2.16, 2.28) 邊尙連(7.16) 李福采(11.26, 12.28, 1.28, 4.3, 4.12, 6.8)				
『典8』 1793.7.25., 8.24, 9.20, 12.20, 1794.2.26, 8.10	1793.6	1794.9	申大顯	卞光五 소통사 邊尙連 白貴福(10.20) 田次東(2.26) 鄭福興(8.10)				
『典8』 1796.2.10, 8.19, 9.28 『承』 1796.10.15 『承』 1796.10	1794.9	1796.12	李得濟	尹德祚 소통사 李福彩(2.10) 邊尙連(8.19, 9.28)				
『典8』 1797.1.16, 7.14	1796.12	1798.11	尹得達	卞光五 통사 金應淵	趙重澤 ⁶⁹⁾			
『典9』 1798.12.8, 1799.1.29. 5.25, 9.6 『事4』 11.16	1798.11	1800.5	任崱	尹德祚 통사李福彩(12.8, 1.29) 朴遇春(5.25)				
『□5』 1799.6.25	1798.11	1800.5	任崱	玄晉永 ⁴¹⁾ 의				
『典10』 1800.7.7, 1801.9.8	1800.5	1802.3	李仁秀	尹德祚 소통사 李福彩(7.7) 李千成(9.8)				

에는 강원도 심약으로 나옴.

조선후기 중인의 지방 파견제도와 그 실상

『□ 5』 [1800.9.22], 1801.8, 1802.1.15	1800.5	1802.3	李仁秀			[朴迴秀 ³⁸ 漢 1800.9.22. 軍官 郎廳 으로 부임	朴昌堉 1801.8	司國亮 ⁷⁰⁾ 1802.1.5	
■ 1802	1800.5	1802.3	李仁秀	前主簿 安廷麟▲ 鄭暹 ³¹ 의 黃鉉★		前主簿 朴世祐 25漢 韓宗厚 61清	副司果 朴昌堉	司果 吳命坤	
『□ 5』 1802.7.6, 1804.3.4, 4.28	1802.3	1804.6	李潤謙	黃鉉(7.6) 李光祚(3.4)		金履勳(4.28)			
『典10』 1802.7.4	1802.3	1804.6	李潤謙		卞之領 소통사 朴遇春				
■ 1804	1802.3	1804.6	李潤謙	前主簿 黃鉉 ⁷¹⁾ ★ 崔性綏 ³⁵ 의 (+1783 籌學 취재) 朴奉燁★		前主簿 韓宗厚 61清 金履勳 ?역	前主簿 李命奎	司勇 吳命坤 副職軍 金學基	
『□ 5』 1804.8, 1805.4.19	1804.7	1806.5	柳孝源		金健瑞		主簿 金宗欽 (1804.8)		
『典10』 1804.11.18	1804.7	1806.5	柳孝源		玄時鎮 통사 邊尙連				
『典10』 1806.9.6, 9.21, 10.13, 1807.2.22, 9.1, 11.8	1806.5	1807.12	李滄		玄時鎮(9.6) 玄時祐(9.21, 10.13) 卞之欽(2.22, 9.1, 11.8) 소통사 李福采				
『典10』 1808.8.15, 11.19	1807.12	1810.11	申大英		卞之欽 통사 李福采				
■ 1812	1810.11	1812.12	吳載光	鄭栢秀★ 李鼎德 ⁵⁶ 의	卞之欽 ⁷²⁾	金載堉 ³³ 漢 崔默 23역	林益秀	崔聲玉	
『日』 1813.2.8	1813.1	1815.7	徐侯輔		卞之欽 통사 鄭孝得				
『□ 7』 1814.4.26	1813.1	1815.7	徐侯輔				金建種 ⁷³⁾		

60) 세병관의 현판 중 많은 수가 분실되었다. 그런데 분실된 현판 중 하나가 다음 문헌에 수록된 것을 찾아냈다. 金基洛 編, 『嘉齊事實錄』, 1865,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57-가61. 이 기록 중 십악

(□ 7』 1815.12.30, 1816.윤6.7 1817.1.2	1815.7	1817.4	申鴻周	洪燁 ⁷⁴⁾ 34 (+1832 籌學 취제) 朴道明 45의 (윤6.7, 1.2)					
『□ 7』 1816.12.30	1815.7	1817.4	申鴻周			李寅植★			
『□ 7』 1818.1.4	1817.4	1819.3	徐春輔		李鎮崑?역	鄭文保 28漢			
『邊16』 1818.12	1817.4	1819.3	徐春輔		李鎮崑?역				
『邊16』 1820.2	1819.5	1820.6	吳毅常		韓重呂				
■ 1820.7	1819.5	1820.6	吳毅常	前主簿 李思秀 34의 通訓 慶致學 ⁷⁵⁾ 30의		前主簿 洪景喆 ⁷⁶⁾ 23漢·清			
■ 1823.8	1821.10	1823.8	朴基豐	金樂昇★		金漢慶?漢 ⁷⁷⁾	金壽權	金進洙	
『邊』 1824.2 『事』 3.23	1823.8	1825.3	趙華錫		朴基龍 『邊』 통사 鄭國道 『邊』 『事』	鄭應鳳			
『推鞠日記17』 1827.8.22	1827.3	1829.3	李維秀		尹鴻信 통사 鄭國道				
■ 1830.3	1829.2	1830.4	金煥	兪正 皮宗恒 39의 直長 卞崑30의		卞光鈴 43漢 (1836 籌 取才)	兪知 金秀鍾		
『承』 1831.3.18	1830.4	1832.3	李恒權		趙鴻鵠				
『承』 1837.3.6(헌종 3) 『日』 1837.4.7	1837.1	1839.2	李鼎會		朴基稷 [假代倭學] 卞義圭(4.7)				
『慶尙左水營啓錄1』 1843. 7.28, 8.18, 9.11, 9.26, 11.23, 1844.2.5, 2.27, 3.27, 5.11, 『備』 6.22	1843.4	1845.2	許榮		洪得周 소통사 鄭國道 金致坤(6.28)				
『□ 9』 1844.7.26	1843.4	1845.2	許榮	鄭麟夏29의					
『日』 1846.12.10 『統1』 1847.3.12. 3.17, 12.17	1847.1	1848.1	徐相五		韓琦淳				

조선후기 중인의 지방 파견제도와 그 실상

『東1』 1849.7.27, 8.22	1848.1	1849.8	金鍵		李最修 통사 金成坤				
『東1』 1849.9.23, 10.14	1849.8	1851.8	柳基常		李最修 통사 金成坤				
『承』 1851.11.16(철종 1)	1851.8	1853.8	李膺緒		金東燁				
『統2』 1853.11.21, 12.11 『承』 1854.4	1853.8	1855.4	李圭徹		朴敎周				
『統2』 1854.6.1, 10.8	1853.8	1855.4	李圭徹		韓寅鎭				
『承』 1858.7	1858.5	1858.12	任泰瑛		朴英煥				
『東2』 1860.8.12, 8.16	1859.9	1860.8	沈樂臣		朴敎周 통사 河致潤				
『東2』 1860. 9.16, 11.30, 1861.1.13, 2.29, 4.2	1861.2	1862.12	申觀浩		朴英煥 통사 河致潤(9.16, 12.8, 1.13, 2.29) 金哲俊(4.2)				
『東3』 1862.7.22, 8.18, 윤8.16, 11.29, 1863.1.14, 2.3, 3.15 『東4』 1863.7.22, 8.13, 9.16, 10.24, 1864.1.10	1862.12	1864.2	鄭圭應		朴敎周 朴英煥(1863.7.22, 8.13, 9.16, 10.24, 1864.1.10) 통사 朴禧良 崔英燁(1862.11.29, 1863.1.14, 2.3, 3.15) 朴宗實(1863.7.22, 8.13) 崔英燁(9.16, 10.24, 1864.1.10)				
『東4』 1864. 4.8, 5.12, 6.23, 7.20, 11.11, 1865.1.7	1864.2	1866.2	蔡東健		朴英煥 통사 崔英燁(4.8) 金宗烈(5.12, 6.23, 7.20, 11.11, 1865.1.7)				
『萊營文牒』 1866.2.6, 4.10, 7.17, 10.14	1866.2	1868.4	金鍵		李最修 소통사 金汝洛				
『東6』 1869.2.8, 7.13, 9.3, 1870.1.6	1868.4	1870.1	李顯稷		洪肇鉉(2.8, 7.13, 9.3) 李最修(1.6) 통사 朴琪淙(2.8, 7.13, 9.3) 金寅培(1.6)				

은 韓時와 李柱가 나오는 데 韓時는 韓時達(1642~?)일 가능성이 크다. 한시달은 의과 한형국의 독자이며 禮賓主簿 김시고의 사위로서 1692년에는 의금부 월령의원으로 나온다 『승정원일기』. 李柱는 10여년 전인 1667년 무렵에 나오는 심약 李柱臣(1633~?)일 가능성이 크다.

『東6』 1870.5.9, 6.15, 12.19 『東7』 1871.2.4, 3.5, 6.9, 6.20 『東8』 8.12, 9.16 『統3』 1870.12.1, 1871.6.1	1870.3	1871.10	鄭圭應		李最修 소통사 李寅澤				李善教 (12.1, 6.1)
『□ 11』 1871.1.6, 12.24	1870.3	1871.10	鄭圭應			卞志沆 ⁷⁸⁾ 27漢 1871 (籌 取才)			
『□ 11』 1872.1.2	1871.12	1874.2	蔡東鍵						李善教 79)1.2)
『東8』 1871.12.17, 1872.1.16, 5.25, 7.17, 12.14, 1873.2.5. 2.16 『東8』 1873.7.23., 7.27, 8.13 『日』 1873.12.10	1871.1 2	1874.2	蔡東鍵		趙廷奎 金東曄(12.10) 소통사 李寅澤 金得奎(7.23, 7.27) 李寅澤(8.13, 12.10)				李鍾玉 (1872. 12.1) 金鍾九 (1873. 12.1)
■ 1874.2	1871.12	1874.2	蔡東鍵			卞志沆 ²⁷ 漢 (1871 籌 取才)			前別提 李善教 李鍾玉 金鍾九
『日』 1879.11 『統5』 1881.5.10 『告』 1882.3.20	1879.2	1882.6	鄭陞銘		趙廷奎				
『東9』 1886.12.5, 1887.2.4, 4.20	1888.3	1890.3	李奎顏		咸賢觀 통사 河敬守				

- 61) 세병관의 기문에 나오는 漢學 秦是英은 『역과방목』을 비롯하여 다른 기록에는 秦時英으로 표기하고 있다.
- 62) 박훈평, 「조선후기 절사의관에 대한 연구」, 『한국의학사연구』 31-1, 2018.
- 63) 최만익은 1678년에 황해도 감영의 역학으로 나온다. 『同文彙考』 2, 原編 卷70, 漂民 5.
- 64) 왜학 양시용(1679~?)은 그가 왜학으로 파견 근무했던 옥포에 1735년에 만호로 제수되었다. 『승정원일기』 1735년 6월 13일.
- 65) 李億(1698~?)은 세병관의 1738년 2월의 기문에는 한학으로 나오지만 1723년의 식년사에서 왜학 전공으로 입격했다.
- 66) 漢學 朴壽豐은 자신이 직접 성명을 기재하는 충렬사의 『심원록』에는 朴守豐으로 기재하고 있어 朴守豐이 맞을 것이다.
- 67) 화원 崔得賢은 『심원록』에 자신의 본관을 밝힌 덕분에 그의 본관이 흥해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는 1781년 12월에 도화서로 복속하고 영구히 시果에 부치라고 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가 이제 막 통영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음을 알려준다.

-
- 68) 『심원록』에는 본관을 평양으로 기재한 趙得淵이 漢學 이경필과 함께 1784년 8월 18일에 충렬사에 참배한 것으로 나온다. 이것으로 미루어 『심원록』에 나오는 趙得淵은 울과 급제자 趙得淵(본관 평양, 1718~?)으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울과방목』에 의하면 그는 생년이 무술년, 곧 1718년생으로서 당시 그는 67세였다. 따라서 조득연은 공무보다는 漢學 이경필을 따라 통영에 개인적으로 왔을 가능성이 크다.
- 69) 『일성록』 1797년 9월 10일.
- 70) 1780년에 울과에 급제한 劉國亮(본관 한양, 1756~?)은 1802년 정월 15일에 충렬사에 참배했다. 울관 유국량이 통제영에 공무 때문에 일시적으로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 71) 黃鉉은 1802년 7월 6일에 충렬사를 심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직전에 통제영에 파견되었을 것이다.
- 72) 『노상추일기』 1811년 12월 30일.
- 73) 34세가 되는 1814년에 통제영에 파견되어 충렬사를 그 해 4월 26일에 심방한 화원 金建種(1781~1841)은 『심원록』에 자신을 개성 후인으로 밝히고 있다.
- 74) 洪燁(1783~?)은 33세가 되는 1815년에 통제영에 파견된 후 1832년에는 籌學에 입격하였다.
- 75) 慶致學(1790~?, 청주)은 30세가 되는 1819년에 통제영에 파견되었는데, 이보다 6년 전인 1813년에 의과 식년시에 급제한 바 있다.
- 76) 기문 중 洪景喆은 『의과방목』과 『승정원일기』에는 洪慶喆로 나온다.
- 77) 1823년 8월의 세병관 기문 속의 金漢慶은 洪大容의 『湛軒書』 外集 2의 「杭傳尺牘」 중 乾淨衙筆談의 1766년의 2월 3일 기사에 연경에 파견된 통역관으로 나오는 데, 1770년 6월 23일의 『승정원일기』 기사 중 사행 역관을 위무하는 기사에 나오는 金漢卿과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어 『승정원일기』 1777년 8월 19일자 기사에 나오는 상소한 역관 197명 중 한 사람으로 나오는 前銜 金漢卿과 같은 인물일 것이다. 이 같은 추론이 맞다면 그는 노년에 통제영에 파견된 셈이다.
- 78) 28세가 되는 1871년 정월에 통제영에 파견된 卞志沆(1844~?, 초계)은 7년 전인 1864년에 역과에 급제했다. 그런데 충렬사를 심방한 바로 그 해 籌學에도 입격한 것으로 미루어 통제영 근무 중 籌學 시험을 보러 한양에 다녀왔을 것 같다. 그렇지만 입격한 후에도 여전히 한학의 자격으로 통제영에서 근무하였다.
- 79) 47세가 되는 1870년에 울관으로는 처음 통제영에 파견된 李善敎(1826~?, 정선)는 24세가 되던 1849년에 울과에 입격했다.

